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CONTENTS

제1장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I. 사회서비스 개요	7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
III. 바우처 시스템 운영	17
IV. 바우처 운영 관련 행정사항	42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I. 사업 개요	55
II. 자체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63
III. 이용자 선정	70
IV.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78
V. 서비스 실시	84
VI. 제공기관 운영·관리	89
VI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	100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I. 제공기관 등록	125
II. 제공기관 정보관리	136
III.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37
IV. 현장점검(검사, 법 제32조)	142

부 록

붙임 1. 공통서식	167
붙임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서식	204
붙임 3. 참고자료	248



... 제 1 장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I. 사회서비스 개요_7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_12

III. 바우처 시스템 운영_17

IV. 바우처 운영 관련 행정사항_42

주요변경사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분	2014년	2015년
추진경과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제도화('15.1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으로 운영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 (신설)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특 예산관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별도 지출한도 관리”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보조방식 운영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려 해소 ○ (예산 편성) 연도별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규모는 지속 확장관리 (복지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기준 '14년 1,902억 → '15년 2,135억(증 228억) ○ (지자체 예산배분) 시도별 예산 배분결정시 우리부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 환류 및 사업 관리에 따른 책임성 확보 ○ (예산집행조정권) 연도별 예산 일정(약 100억)을 복지부가 보유, 사회 서비스 수요 급증 또는 사업수행 우수 지자체 등에 배분, 집행 신속성 부여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배정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출 한도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 수요 파악을 통하여 예산신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기획재정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보건복지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시·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시·군</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마련 ○ 지자체별 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예산 편성 ○ 사업 관리 ○ 사업 집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마련 ○ 지자체별 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예산 편성 ○ 사업 관리 ○ 사업 집행



구분	2014년	2015년								
포괄보조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신설)	<신 설>	<p>○ <u>예산신청시 유의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게 특정 내역사업의 과도한 확장 또는 축소 금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연중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되,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의 기준변경 건은 매년 사업계획과 함께 복지부로 승인 요청* *기존서비스 중 표준모델서비스는 지침상 지원기준 및 단가 참고 <p>○ <u>복지부 유보액('15년 100억) 활용 방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61억 배정 ('15.1월) - 시·도 신규사업에 추가 예산 배정 (약 20억) ('15.1월 ~) -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시·도별 부족액 추가 배분 (약 20억) ('15.4월 ~) 								
서비스 결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결제방법</td> </tr> <tr> <td style="width: 30%;">사업명</td> <td>결제방법</td> </tr> <tr> <td>일반원칙</td> <td>월별 결제 실시(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td> </tr> <tr> <td>결제 시기</td> <td></td> </tr> </table>	결제방법		사업명	결제방법	일반원칙	월별 결제 실시(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결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는 일정 유보액에 대해서 성과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 조정에 활용 - 복지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신규사업 개발비용,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지자체 지원으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미집행 (불용) 과다 지자체는 성과평가에 환류 *지특회계전환에 따라 예산 미집행에 대한 시·도간 조정 불가
결제방법										
사업명	결제방법									
일반원칙	월별 결제 실시(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결제 시기										
서비스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원칙 - (결제 시기)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을 원칙으로 함 - (결제 금액)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P/N)을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원칙 - (결제 시기)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을 원칙으로 함 - (결제 금액)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P/N)을 결제 								

구분	2014년	2015년
사업명	결제방법	결제방법
	<p>* (예시) 월 4회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2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50%만 결제 하고, 3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3회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당 월 말 일까지 결제하고, 제공횟수 등을 나누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15일 이후 결제</p> <p>* 해당결제 시행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서비스 제공 회수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을 결제</p>	<p>* (예시) 월 4회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2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50%만 결제 하고, 3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3회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당 월 말 일까지 결제하고, 제공횟수 등을 나누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15일 이후 결제</p> <p>* 해당결제 시행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서비스 제공 회수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을 결제</p>
결제 금액	<p>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결제</p> <p>* (예시) 월 8회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 경우 50%를 초과한 5회이상 서비스 제공시 전액 결제, 기타 1~4회 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의 반액을 결제함</p>	<p>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결제</p> <p>* (예시) 월 8회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 경우 50%를 초과한 5회이상 서비스 제공시 전액 결제, 기타 1~4회 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의 반액을 결제함</p>
예외적 결제방법 (p26)	<p>○ 예외적 결제방법</p> <p>- (소금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당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 소금결제 시 바우처 생성제한(CAP) 적용으로 인한 익월 바우처 미생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p>	<p>○ 예외적 결제방법</p> <p>- (소금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서비스 제공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나 정상적인 당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 단, 당일 바우처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이 원칙임에 따라, 바우처 미소지자의 경우 이용자 선정 이후 최초 1개월은 소금결제를 인정하되, 1개월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p> <p>※ 해당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당일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당일 미제공된 서비스는 익월 말일까지 보장 가능(결제는 보장하는 당일 이루어짐)</p>
	<p>< 회당 결제금액 산출방법 ></p> <p>· (예시1)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동일한 서비스가 4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44,000원/월4회 → 회당 36,000원 × 4회 결제</p> <p>· (예시2) 인터넷과물인터넷청소년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가 5회(심리상담 2회, 대체활동 2회, 캠프 1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80,000원/월5회 → 회당 36,000원 × 5회 결제</p> <p>· (예시3) 노인맞춤형활동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 12회 중 10회를 실시하고 2회를 익월에 보강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08,000원/월12회 → 회당 9,000원 × 10회 결제 후, 익월 보강 당일 회당 9,000원 × 2회 결제</p>	<p>< 회당 결제금액 산출방법 ></p> <p>· (예시1)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동일한 서비스가 4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44,000원/월4회 → 회당 36,000원 × 4회 결제</p> <p>· (예시2) 인터넷과물인터넷청소년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가 5회(심리상담 2회, 대체활동 2회, 캠프 1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80,000원/월5회 → 회당 36,000원 × 5회 결제</p> <p>· (예시3) 노인맞춤형활동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 12회 중 10회를 실시하고 2회를 익월에 보강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08,000원/월12회 → 회당 9,000원 × 10회 결제 후, 익월 보강 당일 회당 9,000원 × 2회 결제</p>



구분	2014년	2015년						
<p>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주요기능</p>	<p>○ (ARS 결제) 유의사항 - <신 설></p> <p>- 소금결제 및 ARS-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p> <p>- ARS 결제, 소금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는 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p> <p><신 설></p>	<p>○ (ARS 결제) '15년부터 ARS 예외결제는 폐지</p> <p>○ 유의사항 - 회당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당일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야 함</p> <p>- 소금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결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함</p> <p>- 소금결제는 서비스 제공한 다음 월 말일까지만 가능 (결제되지 않은 바우처는 소멸)</p>						
	<p>○ 제공기관 컨설팅</p> <p>- 지원단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제공기관에 대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컨설팅을 시행</p> <p>※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 사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p>	<p>○ 제공기관 컨설팅</p> <p>- 지원단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제공기관에 대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컨설팅을 시행</p> <p>※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 사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p>						
	<p>【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안)】</p> <table border="1" data-bbox="858 1055 1098 1722"> <tr> <td data-bbox="858 1055 896 1258">대상자</td> <td data-bbox="858 1258 1098 1258">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td> </tr> <tr> <td data-bbox="858 1258 896 1460">내용</td> <td data-bbox="858 1460 1098 1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제공기관 회계, 채용, 노무 등 행정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td> </tr> <tr> <td data-bbox="858 1460 896 1722">방법</td> <td data-bbox="858 1722 1098 1722">- 교육방식 : 제공기관 직접 방문 맞춤형 1:1 컨설팅</td> </tr> </table>	대상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제공기관 회계, 채용, 노무 등 행정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방법	- 교육방식 : 제공기관 직접 방문 맞춤형 1:1 컨설팅	
대상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제공기관 회계, 채용, 노무 등 행정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방법	- 교육방식 : 제공기관 직접 방문 맞춤형 1:1 컨설팅							

I 사회서비스 개요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정의]

-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 (기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 법률 상 사회서비스의 정의]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회서비스 종류)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사회적응지원 및 상담·지도 서비스,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 명시적(전자카드) 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8대 바우처 사업 추진

【사회서비스의 특징】

-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2 사회서비스 추진 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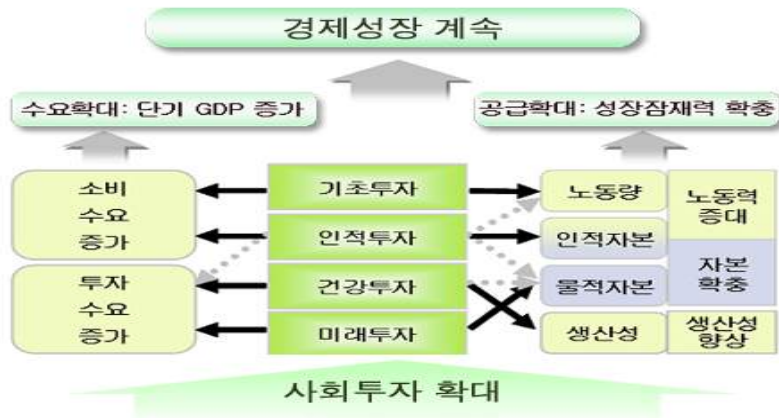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가족, 특히 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식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지 사회화 불가피
-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 반면,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
 - 따라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략 예방

※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 : ('00년) 9.8% → ('12년) 14.6%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사회 경제의 양극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대표되는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
- 인적 자산과 사회기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빈곤의 세습 방지 및 사회이동 촉진

가) 【사회투자와 경제성장간 선순환 개념도】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28.8)는 서비스업 평균(18.0)은 물론 제조업 평균(8.5)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2012년 기준, 한국은행, 2014)
- 특히 중·장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단위 : 10억원당 명)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28.8명	18.0명	13.2명	8.5명

※ 취업유발계수 : 산출액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자영자+무급가족 포함), 한국은행(2014)

- 여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3 추진 경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06.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06.7월) 등 전담조직 구성·운영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06.9월,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사회서비스 확충 실행전략 마련('07.1월, 연두업무보고)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07.2~4월)
-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 및 확대('07.5월~'09.9월)
- 새정부의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채택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선진화 전략('08.9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선진화 방안('09.4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10.5월)」등에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산업화, 품질관리 관련 대책 발표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1.8.4) 및 시행('12.2.5)
 - ※ 사회서비스 사업 목적, 계획수립, 이용권 발급, 이용자·제공기관 준수사항, 벌칙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규정
 - ※ 등록제 도입(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기관 등록하도록 규정) ('12.8.5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12.1.26) 및 시행('13.1.27)
- 「사회보장기본법 추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방향」 발표('12.3월)
- 「사회서비스 사업 포괄보조 전환방안」 발표('12.9월) 및 시행('13.2.1)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13.7월)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제도화 ('15.1월)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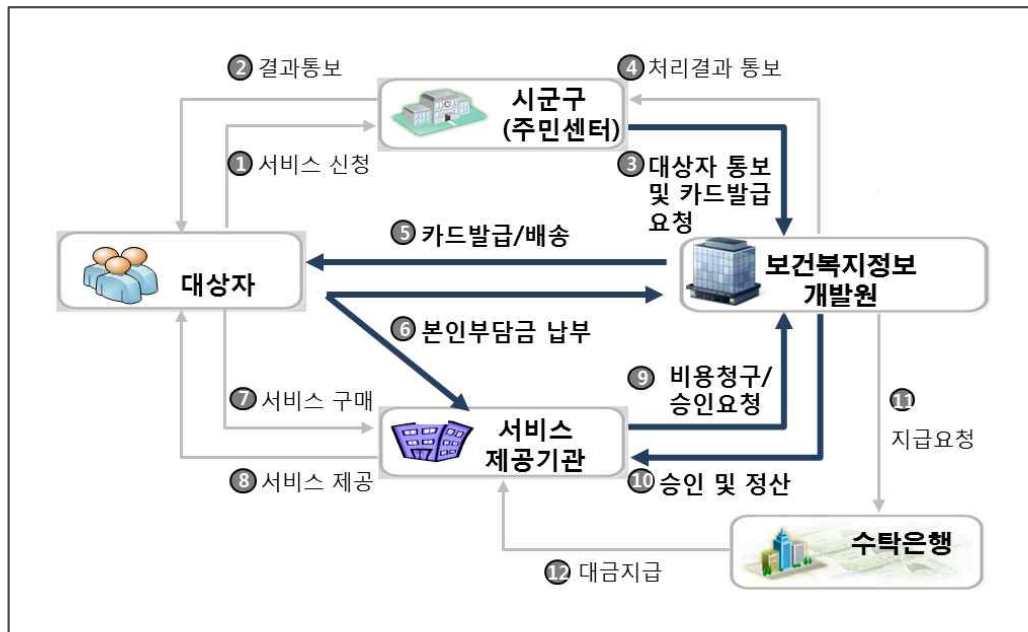
□ 바우처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나) 【전자바우처 운영흐름도】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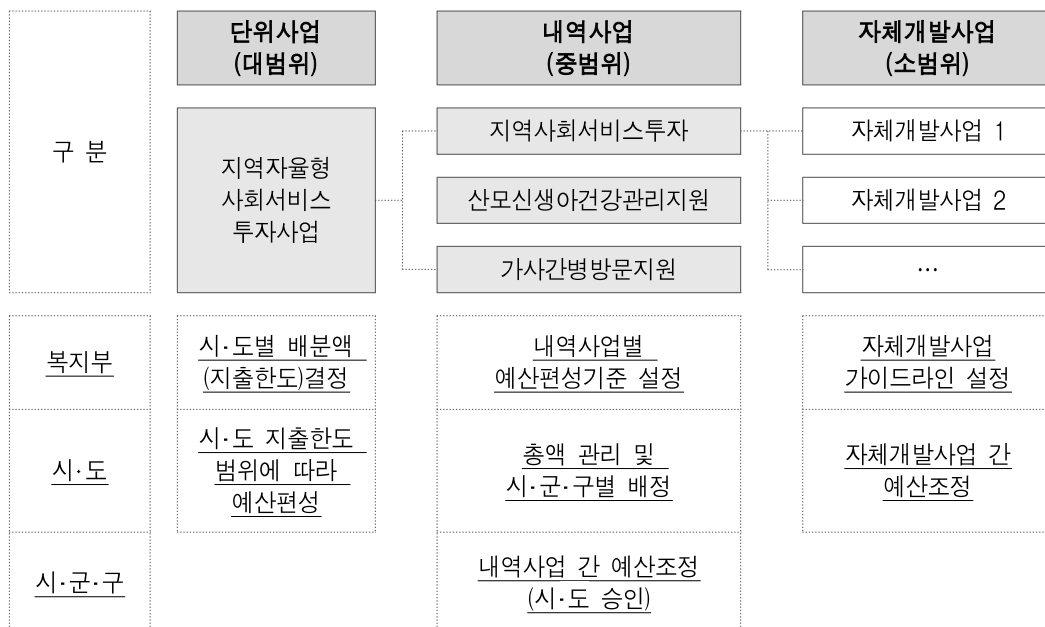


용어의 정의 및 사업구조

□ 용어의 정의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각각을 의미
 - 자체개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단일 또는 복수의 시·군·구, 시·도가 개발한 사업으로 기준정보가 관리되는 단위를 의미
- ※ 개별적으로 사업코드가 부여된 단위. 단 여러 지역에 공동코드가 부여된 경우 사업코드+사업 개발지역으로 판단

□ 사업구조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 개요

1 추진배경

-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
 - 복지부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을 매년 심사·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 돌봄서비스 간 칸막이로 지역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사회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적 공급체계 개편 추진

구분	개별보조	포괄보조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 ▪ 보편적 욕구가 있더라도 집행 재량이 필요한 사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된 기준을 설정, 집행하여 지역간 형평성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실험적 사업 용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의 경직성 ▪ 사업 간 분절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 편성 필요 ▪ 지역 간 편차 발생 유의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 기획 및 집행상 자율성·책임성 부여

2 대상 사업 및 예산편성 운영방식

□ 대상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



다) 【통합대상 사업】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국비, 백만원)	보조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13,564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158,441	서울 50%, 지방 70% 신성장추진 8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36,067	
- 가사간병방문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19,056	

※ 예산액 중 100억원(유보액)은 사업 진행 중 성과평가 및 사업 집행 현황에 따라 복지부에서 추가 배분 예정

□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조정 원칙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각각을 내역사업으로 두고, 복지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별 예산 자율편성

-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내역사업 간 예산 편성·조정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자체 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도가 선정하여 편성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수요에 따라 자치구간, 자체개발사업 간 예산 자율 조정

※ 지역 수요에 따라 자체 개발사업을 편성하되, 아동·노인·장애인 등 특정 사업대상에 편중되지 않고 가능한 지역 현황에 맞게 골고루 편성되도록 권고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저소득가정렌탈서비스는 '15년 표준모델에서 제외, 구조 조정을 거쳐 '16년 새로운 지역개발 서비스로 개편

㉓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

마)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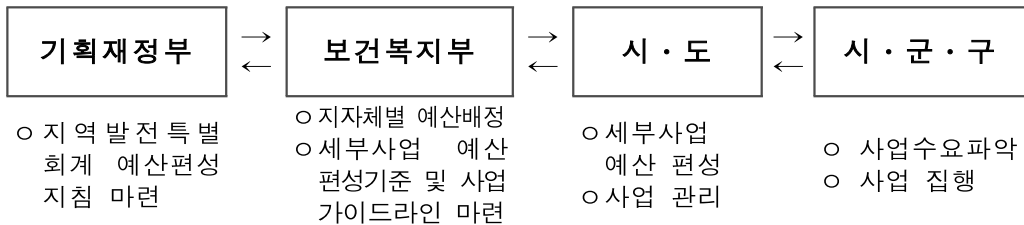
라) ○ **(지특 예산관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별도 지출한도 관리”로 구분
* 포괄보조방식 운영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려 해소

○ **(예산 편성)** 연도별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규모는 지속 확장관리(복지부 협의)
* 국비기준 '14년 1,902억 → '15년 2,135억(증 228억)

○ **(지자체 예산배분)** 시·도별 예산 배분결정시 우리부 의견 반영
* 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 결과 환류 및 사업 관리에 따른 책임성 확보

○ **(예산집행조정권)** 연도별 예산 일정액(약 100억)을 복지부가 보유, 사회 서비스 수요 급증 또는 사업수행 우수 지자체 등에 배분, 집행 신축성 부여

- 시·도는 배정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출한도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 수요 파악을 통하여 예산신청





●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게 특정 내역사업의 과도한 확장 또는 축소 금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연중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되,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의 기준변경 건은 매년 사업계획과 함께 복지부로 승인 요청*
- * 기존서비스 중 표준모델서비스는 지침 상 지원기준 및 단가 참고

● 복지부 유보액 (15년 100억) 활용 방안

- '14년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既 61억 배정 (15.1월)
- 시·도 신규사업에 추가 예산 배정 (약 20억) (15.1월~)
-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시·도별 부족액 추가 배분 (약 20억) (15.5월~)

4 포괄보조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 복지부는 자체 유보액을 성과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 조정에 활용
 - 복지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신규사업 개발비용,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지자체 지원으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미집행(불용) 과다 지자체는 성과평가에 환류
 - ※ 지특회계 전환에 따라 예산 미집행액에 대한 시·도간 조정 불가능

Ⅲ 바우처 시스템 운영



1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1)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신청인
↓		
신청서 입력 (행복e음)	● '행복e음'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정보 입력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 및 휴대전화 필수 입력	읍·면·동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행복e음)	● '행복e음'의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정보개발원)	시·군·구
↓		
카드 제작·배송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 제작 후 월 5회 배송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처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우체국)
↓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 신청인이 읍·면·동으로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신분증이 필요



- 서비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 카드 발급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
- 시·군·구는 [공통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문을 읍·면·동에 비치하고 안내
- 시·군·구는 신청인 중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한해 행복e음을 통해 정보개발원으로 카드 발급 관련 자료를 전송
- 정보개발원은 시·군·구로부터 전송된 서비스 대상자별 카드 발급 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바우처 카드를 제작·배송
- 서비스 대상자는 카드 수령 후 별도의 조치 없이 카드 사용 가능

[바우처 카드 관련 안내 사항]

- 신규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바우처 카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해야 함을 안내

2) 바우처 카드의 특징

- 정보개발원이 바우처 전용카드를 제작·보급
- 바우처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3)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주체 : 정보개발원
 - 시·군·구로부터 카드발급 정보 수신 후 매월 4일, 11일, 19일, 22일, 26일(휴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바우처 카드를 제작·배송
 - 우체국을 통하여 계약 등기 우편으로 배송 실시

등기배송
(우체국)

- 1차 방문 후 수령인 부재시 다음날 재방문 실시
- 재방문 후 수령인 부재시 2일 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처리
 - * 방문 시 문자 메시지 및 우편물 도착안내서 부착

- 제작된 바우처 카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배송이 원칙이며, 최대 2주내에 배송
 - 바우처 카드는 주소오류나 수령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처리
 -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하도록 안내
 - 바우처 카드 배송 현황은 전자바우처시스템(news.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 가능
 -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바우처 카드 사용 등록 :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4) 카드 재발급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읍·면·동에 재발급 신청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재작성
 - ※ 서류작성 시 신청구분을 ‘재발급’으로 표기하고 재발급 사유를 적시
-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카드재발급 신청 정보를 전송하면, 신규 바우처 카드가 재발급
 - 바우처 카드 재발급 후에는 기존 카드의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
- 배송절차는 신규발급 시와 동일

2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의 의미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은 후, 서비스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바우처 생성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 미생성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미생성 사유에 따른 조치 후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매월 바우처가 생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 바우처 잔량은 모두 소멸
 - 적용대상 사업 :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

- 해당 월의 바우처 잔량은 익월에 한하여 이월되므로 해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장 가능 (단, 연도전환 시(매년 1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은 소멸 처리되므로 해당 사업기간 내 보강을 완료해야 함)

- 시·군·구는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이 전혀 없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자격 상실 처리해야 함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생성제한 적용 사례 : 매월 20,000원이 생성되는 바우처인 경우
 * 4월에 잔여바우처 10,000원은 5월에 한하여 이월되므로, 5월에 사용하지 않은 5,000원은 5월 말에 소멸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이용가능 바우처	20,000	20,000	30,000	40,000	40,000	40,000
실제 이용	20,000	10,000	5,000	0	0	
잔여바우처	0	10,000	25,000	40,000	40,000	
이월 바우처	0	10,000	20,000	20,000	20,000	
소멸 바우처	0	0	5,000	20,000	20,000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자격상실 처리

㉓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바우처는 매월 말일, 월간 한도(정부지원액 만큼) 생성
 - 본인부담금을 기관이 대납하거나 납부받지 않고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반드시 제공기관에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사전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 ※ 현금납부 시 [공통양식 제3호]에 따라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 후원

- 후원자가 후원금 수혜자를 특정 제공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 직접 후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할 경우,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여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함

※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의 수단으로 후원금을 이용할 수 없음

4 본인부담금 환급

- 환급범위 : 이용 중단 후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 발생시 1달 이내 환급
- (일반원칙) 회당 결제 대상 사업은 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 후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사용 잔액을 환급
 - 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 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름(월별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월별 결제 대상 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 저소득건강증진서비스)

구분	서비스제공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 귀책시	50% 초과 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 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 귀책시	50% 이하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 이용	환급없음

-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환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업종별 표준약관' 등 준수

5 바우처 사용 중지기간

- 바우처 사용 중지기간 중 바우처 결제 불가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또는 자동 중지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사용 중지기간이 변경

【중지사유별 기존 바우처 사용 중지시점】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사용 중지기간
본인포기	대상자의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중지 요청일 다음날부터 계속
사망, 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속
자격 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수급자격 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일부터 계속
판정결과 탈락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수급자격 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일부터 계속
사업종료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속
바우처 미사용	최종 사용일부터 2개월동안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자격상실 결정한 다음 날부터 계속
자격 정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바우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동안

- 바우처 사용 중지기관과 관계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연도 전환과 관련되어 해당 사업기간 내에 생성된 바우처는 매년 1월 31일로 소멸
 - ※ (예) 이용자의 대상자격 유효기간이 '14.5월~'15.4월인 경우 '14.5~'15.1월 사이에 생성된 바우처는 '15.1.31일에 소멸되며, '15.2월부터 다시 바우처가 생성
 - 단,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매월 생성되지 않는 사업(주기생성 사업)의 경우 바우처 잔량 이월 처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 조치
 - ※ 정당한 사유: 지자체 통보 지연, 제공기관 등록 지연,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전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 사용기한이 변경



6 바우처 카드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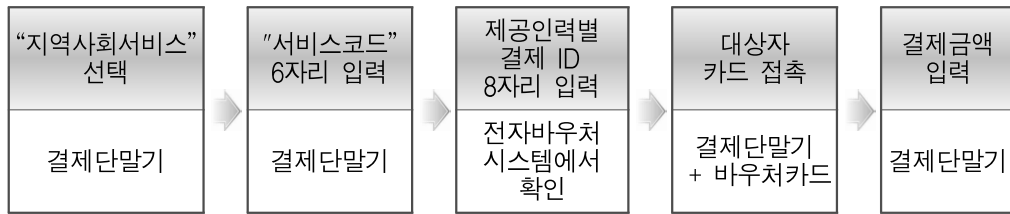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바우처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ARS(1644-9911)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음

7 서비스 결제

1) 결제 원칙

-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바우처 카드
 - '15년 2월부터 ARS를 통한 결제가 폐지
 - ※ 단, ARS를 통합 바우처 잔액조회 및 카드배송현황 등의 서비스는 사용이 가능
- 결제방법
 -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 출력 가능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입력 및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정부지원금)를 입력

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 결제 원칙

- (결제시기)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을 원칙으로 함
- (결제금액)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P/N)을 결제
 - ※ 회당 결제는 서비스 제공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후 서비스에 대한 선결제 금지
 - ※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합의하에 원래 서비스 제공일자에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차후에 제공(보강)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원래 서비스 제공일자에 결제해서는 안되며, 보강하는 당일에 결제해야함 (보강은 원래 서비스 제공월의 다음월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결제 불가)
 - ※ 회당 결제금액은 회당 서비스 시간과 상관없이 결제편의상 월당 횟수(N)로 나눈 것이며, 각 회별 서비스 내용을 반영한 실질적 단가가 아니므로, 각 회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회당 결제금액 산출방법 >

- (예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동일한 서비스가 4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44,000원/월4회 → 회당 36,000원 × 4회 결제
- (예시2) 인터넷과물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가 5회(심리상담 2회, 대체활동 2회, 캠프 1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80,000원/월5회 → 회당 36,000원 × 5회 결제
- (예시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 12회 중 10회를 실시하고 2회를 익월에 보강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08,000원/월12회 → 회당 9,000원 × 10회 결제 후, 익월 보강 당일 회당 9,000원 × 2회 결제

- (일회성 서비스) 아동체험학습 서비스, 노인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 등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제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는 결제 불가)

- (기타) 사업 특성상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은 월별 결제 허용

※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등 2가지 서비스만 월별 결제 허용

기타	결제 시기	월별결제 - 각 서비스별 대면접촉(정기 유지보수, 정기 집합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날 결제
	결제 금액	해당 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 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결제

2) 기타 결제

- (소급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서비스 제공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나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소급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결제날짜를 기재하여야 함
 -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 후 30일까지만 가능
 - 단, 바우처 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후 최초 1개월 내에 행한 서비스에 한해 인정
- (보강) 회당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당일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당일 미제공된

서비스는 익월 말일까지 보장 가능(결제는 보장하는 당일 이루어짐)

※ 예시) 월 4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바우처 카드 미소지 등으로 당월에 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익월에 한해서 보장 가능

● **(ARS 결제) '15년부터 ARS 결제는 폐지**

● **유의사항**

- 회당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당일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급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결제날짜를 기재하여야 함



제공인력 결제 ID 도입에 따른 필수업무 처리절차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용 -

단계	업무 내용
제공인력 정보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 정보 등록 시 반드시 제공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유형 정보를 등록해야만 정상 결제가 가능함에 유의
제공인력 결제 ID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인력 결제 ID를 확인하고 제공인력별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정보입력 후 제공인력 현황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 현황조회” 화면에서 제공인력 ID 16자리와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등 2종류의 ID가 조회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를 위해서는 8자리의 제공인력 결제 ID를 활용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을 매칭 * 시스템 화면 : 대상자관리 >> 서비스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
단말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결제를 위해 전용 단말기를 신청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단말기와 제공인력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단말기 사용 제공인력과 단말기 정보를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등록 ● 스마트폰 정보 등록하고 제공인력과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바우처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바우처 카드, 제공인력 결제 ID, 단말기를 활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 바우처거래내역조회 >> 바우처승인/취소내역조회

* 화면별 상세 매뉴얼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8 서비스 이용 시간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간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9 추가 구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 전액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10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제공인력(제공기관)이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기관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으로 해당 처분 사항을 통보
 -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처분종류 및 세부기준, 벌칙부과요건 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공기관의 의무” 부분 참조
- 행복e음을 통해 부정 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정보개발원에 징수 의뢰 또는 직접 환수 실시(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 모니터링 결과 부정결제가 의심되는 기관은 복지부 합동 점검 및 지자체의 자체 점검을 통해 점검 예정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서비스 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상담전화(02-6360-6799) 운영(정보개발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정보개발원) → 사실 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 정보개발원은 제공인력(제공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11 바우처 사업의 관리

-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 '시군구 담당자'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설치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관리
 - 대상자의 카드발급 현황, 바우처 생성·이용 내역, 바우처 미사용자, 정산내역, 예탁금현황 등 조회 등 가능

2 예산의 집행 및 관리

1 서비스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 위탁주체 : 시·군·구청장
- 위탁업무 수행 기관 : 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업무위탁 목적
 -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급 등을 정보개발원에서 통합 관리 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 예탁 및 비용 지급
 - 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마다 각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비용을 지급



아)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지방자치단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시·도 및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보건복지부와 정보개발원에 보고 및 통보(변경사항 포함)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예산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서비스 대상자(제공인력)별 바우처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제공 기관별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2 비용의 예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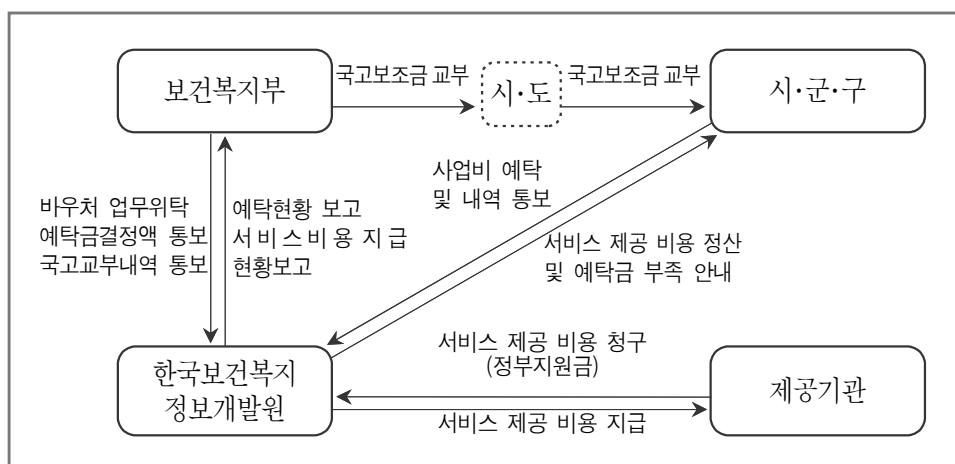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의 지급 위한 비용을 정보개발원이 지정한 계좌로 사전에 예탁
-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을 교부
- 시·군·구청장은 매월 예탁마감일 날짜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정보개발원 지정계좌에 즉시 납부 (예탁이 늦어 서비스 비용 지급이 지연된 지자체는 성과평가 불이익 부여)
 - ※ 내역사업별로 예탁을 실시하되, 내역사업별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예탁금 조정 요청(공문시행)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하고,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른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 ※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서비스 비용이 지급됨

1. 【월별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마감일】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비고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정기지급일에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3일 전까지 예탁 (12일, 22일, 2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급이 중단됨에 유의
- 시·군·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정보개발원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보개발원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 정보개발원은 매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예탁금 정산내역 및 예탁금 부족 예상 정보를 제공하며, 예탁금이 부족하여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즉시 통보

가) 【업무처리 흐름도】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비용 청구

- 청구기관 : 제공기관
-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결제폰, 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정보개발원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자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가 가능

2 비용의 지급

- 정보개발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월별 지급 일정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지급일
1회	매월 1일 ~ 10일	15일
2회	매월 11일 ~ 20일	25일
3회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연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 단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
- 정보개발원은 예탁금 잔액이 부족한 시·군·구의 사업비 예탁이 지연되는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정보개발원은 시·군·구가 제공기관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계좌를 통해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제공기관이 서비스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정보개발원으로 전송하면 변경 가능

※ 서비스비용 지급계좌는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㉓ 비용의 정산

- 정보개발원이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 정보개발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제공
 - 시·도 : 매월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제공
 - 시·군·구 : 매월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
 - 정보개발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
- 이자수입의 처리 : 연 1회(결산 시)
 -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정보개발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 정보개발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 정보개발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정보개발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하되, 절사한 금액은 정보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 시·도는 국비와 지방비의 집행 잔액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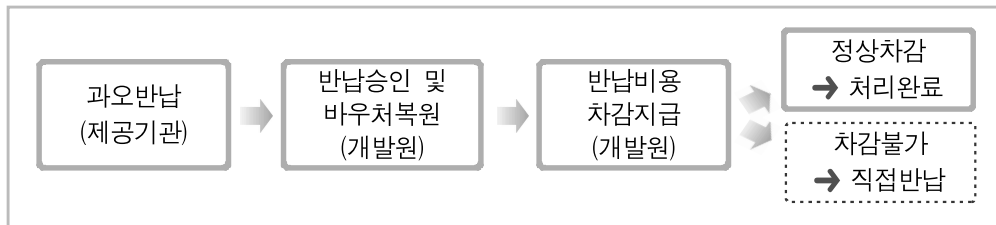
- 시·도는 국고보조금 정산이 확정되면 반드시 당해연도* 내에 집행잔액을 보건 복지부로 조속히 반납 (성과평가에 시·도별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 반영)

* 2014년 정산 후 잔액은 2015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반납

4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등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나) 【과오반납 처리절차】



● 과·오청구 여부 확인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 현황조회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2월 1일~익년도 1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 **(과·오반납 승인)** 정보개발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결제가 가능
- **(과·오반납 비용 차감)** 정보개발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 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 건을 반납하고 정보개발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직접반납)** 정보개발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 청구 비용을 차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 제공기관은 정보개발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다) **【과오반납 비용 예외처리 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 용
과오청구 반환	제공기관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과오결제한 결제 건을 반납
	↓	
반납승인 및 비용차감	개발원	● 정보개발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반납 건에 대해 반납승인일이 속한 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 * 지급예정액을 활용한 차감 지급이 가능한 경우, 과오반납 처리가 완료되며, 차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처리가 진행
	↓	
직접 반납요청	개발원 → 제공기관	● 정보개발원은 과오반납 건 중 지급예정액으로 차감지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단계	업무주체	내 용
과오반납 금액 입금	제공기관 → 개발원	● 제공기관은 정보개발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정된 기한내에 과오반납 금액을 입금
직접 반납 비용 처리	개발원	● 정보개발원은 제공기관이 반납한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납한 비용을 해당 사업 계좌로 이체 * 제공기관이 정보개발원의 직접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개발원은 해당 내역을 관할 지자체로 통보

5 부당이득 정산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부당이득 징수 절차
 -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의 부당이득에 대해 정보개발원에 대집행 요청 가능
 - * 전년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요청 시 처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 결제 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 복원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정보개발원으로 공문 통보
 - *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바우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바우처는 소멸 처리됨에 유의
 - (부당이득 정산) 정보개발원은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집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대집행을 요청하고 정보개발원이 3월 20일에 대집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결과보고) 정보개발원은 처리가 완료된 후 부당이득 징수 요청 시·군·구로 처리결과를 보고

1 지급대상

- 바우처 소멸, 전산장애, 시·군·구청장 인정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보개발원에서 비용을 지급
- 제공기관이 예외상황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지급 시 시·군·구 또는 정보개발원의 심사 후 지급

라) 【예외지급 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증빙자료 제출	제출처
바우처 소멸	● 카드(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인력) 및 단말기 분실 및 파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 본인포기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바우처 소멸사업의 경우 월별 바우처 소멸 포함)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정보 개발원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 전산장애로 인해 바우처가 미생성되었거나 적게 생성된 경우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록지)	정보 개발원
시·군·구청장 인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2 업무처리 절차

- 바우처 소멸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바우처 미·오생성
 - 제공기관이 개발원으로 청구 문서(심사자료)를 발송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 개발원은 제공기관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사유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 지급

마) 【청구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 용
예외지급 청구문서발송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제공기관 →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이 개발원으로 예외지급 심사를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류 시 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 등을 제출 - FAX(☎ 국번없이 1600-4397)로 관련서류를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예외지급 심사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사유 및 제공기록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를 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일 기준(공문제출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청구 모두 완료 시) 익월에 비용을 지급

● 시·군·구청장 인정

- 시·군·구 담당자가 제공기관으로부터 예외지급을 청구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개발원으로 아래 양식에 따라 예외 공문을 청구
-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 개발원은 시·군·구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 범위 내 청구 여부 등만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

바)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성명	주민번호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사업구분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인정시간 (포인트)	서비스 일시	청구월	청구사유
홍길순	111111- 222222	○○복지 센터	111-11 -11111	지역사회	아동정서 (0114)	1등급	180,000			행복e음 전송오류로 인한 바우처 미생성

[작성방법]

- ① 상기에시를 참고하여 입력
- ② 사업구분 : 노인돌봄, 가시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 장애아동, 언어발달 등 사업구분을 입력
- ③ 사업유형 : 타사업은 입력이 불필요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명(서비스코드)를 입력
- ④ 인정시간 : 노인돌봄, 가시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아동, 언어발달 사업은 인정시간(일) 및 포인트를 함께 입력하고 지역사회는 포인트만 입력

※ 예시 : 노인돌봄 2시간(18,400원), 장애아동 1시간(27,500원)

⑤ 청구사유 : 지침에 명시된 예외지급 청구가능 사유 외 실제 청구사유를 기입

사) **【청구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 용
예외지급 심사요청	제공기관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예외지급 심사를 요청 - 청구서류 시 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 등을 제출
	↓	
예외지급 사유 심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 - 사유서 및 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제내역 유무를 확인
	↓	
예외지급 청구문서발송	시·군·구 →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완료 후 지급가능 건에 대해 개발원으로 문서 발송 - 아래 양식을 활용해 인정시간을 명확히 청구 ● 제공기관에 심사완료를 통보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	
예외지급 등록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가 인정한 인정시간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을 청구 - 청구 시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	
비용지급 검증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의 청구에 대한 정합성 검토 등 지급검증을 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를 등록
	↓	
비용지급	개발원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일 기준(공문제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청구 모두 완료 시) 익월에 비용을 지급



IV 바우처 운영 관련 행정사항



1 검사(법 제32조)

1 검사(현장점검)

● 시·군·구

- 등록기관에 대한 1차적 관리주체는 기관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 행정구역 내 전체 제공기관의 70% 이상(15.1.31일 기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서비스 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상담전화(02-6360-6799) 운영(정보개발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정보개발원) → 사실 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 정보개발원은 제공인력(제공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시·도

- 연 2회 정기점검 및 사업별로 수시 점검 실시

[수시 점검대상 기관]

1. 월별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
2. 자체 및 복지부(개발원) 모니터링결과 이상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
3. 기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시·도의 점검결과 및 처분 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 등록 시·군·구에 통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토록 함
 - ※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의 주체는 복지부, 시·도, 시·군·구
 - ※ 법 제21조(부당이득 징수 등) 및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의 주체는 시·군·구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기관 등록상황 모니터링 등 지도·권고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 ※ 광역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
- 현장 점검 결과 지적·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하여 시정 여부 확인

2 보고 및 검사 후 결과처리

-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위반사항 적발 혹은 통보받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처분 실시
- 처분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사회서비스사업과, 정보개발원에 통보
- 그 외 점검실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보고 및 검사 시 유의사항

- 사업제공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관 등록 시·군·구가 1차적 관리 주체가 됨
 -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 간 협조 통한 합동점검 및 시·도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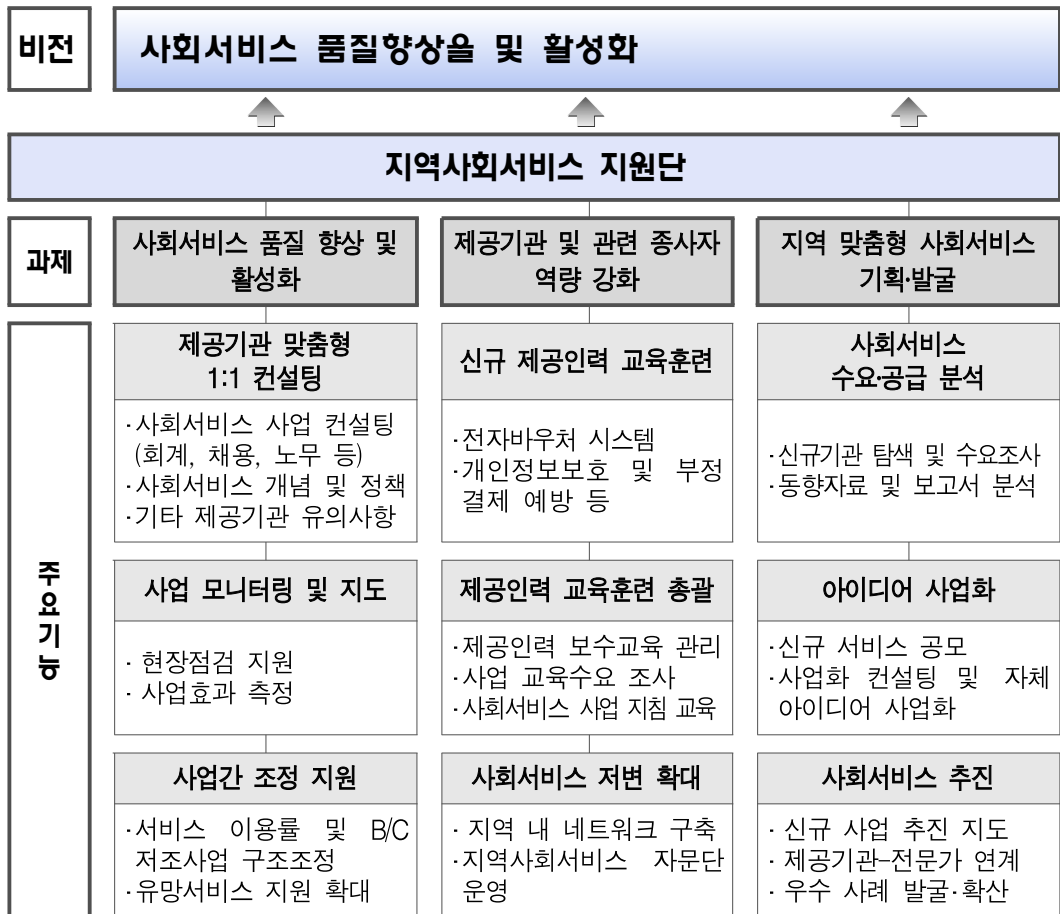
2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1 목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31조

2 주요 기능



● **제공기관 컨설팅**

- 지원단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제공기관에 대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컨설팅을 시행

※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 이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아) **【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안)】**

대상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제공기관 회계, 채용, 노무 등 행정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방법	- 교육방식 : <u>제공기관 직접 방문 맞춤형 1:1 컨설팅</u>

3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운영

- (지정주체) 시·도지사
- (설치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도 산하 복지재단 등 지역내 지원단 기능에 대한 수행 역량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 (기준 지원액) 사업관리비 예산 범위내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지원
 - ※ 민간경상 보조비로 사업비를 편성 운영 (어려운 경우 위탁사업비로 가능)
 - 정부 지원액은 운영비, 인건비(연구인력, 행정인력 등), 연구개발비로 활용
 - ※ 연구개발비 활용 시, 수 개 시·도 지원단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수행 가능
 - 효과적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시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시·도 지사가 판단하여 지정기간은 조정 가능)
- (운영관리) 시·도는 지원단의 운영계획 및 인력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4 지원단 운영관리



-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단은 매년 1월 10일까지 예산집행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신규 지정된 지원단의 경우 지정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지원단 사업계획을 확정 후 7일 이내 복지부로 보고
-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판단하여 승인 후 매월 실적보고 시 관련 사항 보고
 - 단,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후 집행
- **(조직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해당기관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
 - 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도 가능
- **(회계운영)** 지원단 설치 운영 경비는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
 - 예산은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연구개발비로 구분·관리
 - ※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70%를 넘을 수 없음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하여야 함
 - ※ 사업비의 집행은 지원단 명의의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 시·도지사는 지원단 모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을 마련 운영 (필요시 복지부에서 기 시달한 지침 준용)

5 기타 행정사항

- 지원단은 월별 실적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보고 하고, 정보개발원은 해당 실적을 정리하여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 복지부는 시·도 지원단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도 예산 배분에 활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시·도 지원단 월별 실적 모니터링, 교육 및 평가 지원

- 관할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6항)
 - ※ 보호이용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이외에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누설 금지)에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 금지토록 규정, 위반시 같은법 제3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관할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항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정보 수집
- 관할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위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I. 사업 개요_55

II. 자체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_63

III. 이용자 선정_70

IV.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_78

V. 서비스 실시_84

VI. 제공기관 운영·관리_89

VI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_100

주요변경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분	2014년 < 신 설 >	2015년															
신규사업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	< 신 설 >	< 2015년 신규사회서비스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토대로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 마련 -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16년도 지침 개정시 사업모델 수정 및 전국 확대 등 검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신규사업명</th> <th style="width: 20%;">시행지역</th> <th style="width: 50%;">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서비스</td> <td>충북 (청주·진천), 경기, 경북(안동), 대구(달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 협력한 근로자 우선선정 ○ (서비스 내용) 근로자에 대한 정서지원, 직장 내 대인관계 증진, 라이프 코칭, 건강헬링, 부부관계증진,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등 </td> </tr> <tr> <td>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td> <td>충북 (청주·진천) 강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1세 ~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아동 상호작용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 (서비스 내용)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활동 등 </td> </tr> <tr> <td>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하프타임</td> <td>전북 (전주·완주, 익산·정읍)</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무요원 ○ (서비스 내용) 진로탐색 및 조성, 직무적응, 정서순화 서비스 등 </td> </tr> <tr> <td>이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td> <td>경북 (김천·청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만 6~18세 중 적추측만종 아동·청소년 * 외사 소년서를 토대로 해당 학교재정교사가 추천 ○ (서비스 내용) 기초검사, 교정운동 및 운동처방, 개인별 상담, 건강 및 홈트레이닝 방법 제공 </td> </tr> </tbody> </table>	신규사업명	시행지역	사업내용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서비스	충북 (청주·진천), 경기, 경북(안동), 대구(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 협력한 근로자 우선선정 ○ (서비스 내용) 근로자에 대한 정서지원, 직장 내 대인관계 증진, 라이프 코칭, 건강헬링, 부부관계증진,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등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충북 (청주·진천)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1세 ~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아동 상호작용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 (서비스 내용)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활동 등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하프타임	전북 (전주·완주, 익산·정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무요원 ○ (서비스 내용) 진로탐색 및 조성, 직무적응, 정서순화 서비스 등 	이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경북 (김천·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만 6~18세 중 적추측만종 아동·청소년 * 외사 소년서를 토대로 해당 학교재정교사가 추천 ○ (서비스 내용) 기초검사, 교정운동 및 운동처방, 개인별 상담, 건강 및 홈트레이닝 방법 제공
신규사업명	시행지역	사업내용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서비스	충북 (청주·진천), 경기, 경북(안동), 대구(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 협력한 근로자 우선선정 ○ (서비스 내용) 근로자에 대한 정서지원, 직장 내 대인관계 증진, 라이프 코칭, 건강헬링, 부부관계증진,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등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충북 (청주·진천)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1세 ~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아동 상호작용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 (서비스 내용)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활동 등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하프타임	전북 (전주·완주, 익산·정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무요원 ○ (서비스 내용) 진로탐색 및 조성, 직무적응, 정서순화 서비스 등 															
이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경북 (김천·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만 6~18세 중 적추측만종 아동·청소년 * 외사 소년서를 토대로 해당 학교재정교사가 추천 ○ (서비스 내용) 기초검사, 교정운동 및 운동처방, 개인별 상담, 건강 및 홈트레이닝 방법 제공 															



구분	2014년	2015년						
	<p>자체개발 사업계획 (기준정보) 수립</p>	<p>[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사업별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기존 잔여 이용분 및 대기자, 최소한의 신규수요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개발사업으로 전환 <p>< 신 설 ></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규사업명</th> <th>시행지역</th> <th>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원폭피해자 심리치유 등 종합 서비스</td> <td>경 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원폭피해자 ○ (서비스 내용) 원폭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정서 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대인관계/문화체험/가족 캠프 등 다양한 종합 프로그램 제공 </td> </tr> </tbody> </table> <p>[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사업별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신규사업명	시행지역	사업내용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등 종합 서비스	경 남
신규사업명	시행지역	사업내용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등 종합 서비스	경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원폭피해자 ○ (서비스 내용) 원폭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정서 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대인관계/문화체험/가족 캠프 등 다양한 종합 프로그램 제공 						
<p>이용자 선정</p>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 자체개발 서비스 : 생일 도래 월 기준으로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처 및 타 복지 사업과의 서비스 내용, 대상자 등 유사중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하되 불임의 연도 기준표 참고) <p>※ 이용자 선정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만 나이를 별표 생년기준에 따라 운영 (예: 만 8세 ~ 만13세 아동 대상 사업은 2007.1.1.일 ~ 2002.12.31.일 출생자를 해당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간주)</p>						
<p>선정통지</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사용 관련 안내사항 - 2015년부터 회당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 이외의 미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구분	2014년	2015년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p>< 신 설 ></p>	<p>- 2015년부터 해당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각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p>
제공기관 운영·관리	<p>○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p> <p>-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p> <p>-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p> <p>※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p> <p>< 신 설 ></p>	<p>○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p> <p>-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p> <p>-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p> <p>※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p> <p>- 제공시설 및 이용자 안전기준 마련(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서비스)</p> <p>• 돌봄(체험 포함) 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p> <p>•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p> <p>• (여행사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p> <p>•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 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p> <p>※ 위의 사항을 체험 또는 여행서비스 기준정보에 반드시 포함</p>
	<p>○ 제공인력 교육관리</p> <p>-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 신 설 ></p>	<p>○ 제공인력 교육관리</p> <p>-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가능</p> <p>※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집합교육, 지자체 또는 지원단이 주관하는 집합교육, 외부 전문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제공기관이 참여하도록 관리</p>



구분	2014년	2015년
<p>제공인력 관리</p>	<p>< 신설 ></p>	<p>○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 사항(계약,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p> <p>※ 제공기관 등록 후 최초 입력시 등록 후 14일 이내 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p> <p>※ 제공기관 등록 이후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서류(자격증 명세서 등)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p>

I 사업 개요



1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2 사업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3 사업 기간

□ **2015.2.1~2016.1.31(1년)**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정책변경, 예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조기 중단 가능

4 총 사업비

□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 1,584(국비)억원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 예산 : 2,136(국비)억원

□ **지원조건** : 매칭(서울 50%,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559호(2014.9.25.) 성장촉진지역(참고자료 5 참조)

□ **지원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사업추진 및 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사업 총괄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정책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시·도	사업총괄담당부서 (과,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와 사업계획 협의(전년도 12월~연초) ● 시·도(광역시) 사업 총괄 관리 ● 본청 및 시·군·구 사업 선정·관리·감독 ● 복지부에 성과평가 자료 제출(연말) ●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복지부)
	사업별 담당부서 (과,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 사업 지침 마련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사업홍보 ● 서비스 이용자 관리(시·도 개발사업)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제공기관/인력 교육훈련 총괄 ● 사회서비스 컨설팅 및 발굴·기획 ●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구축
시·군·구	사업총괄담당부서 (과,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바우처 사업 총괄 ● 본청 사업 관리 감독 ● 복지부에 성과평가 자료 제출(연말)
	사업별 담당부서 (과,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 서비스 제공자 등록·관리 ● 사업 홍보 ● 서비스 이용자 선정(시·군·구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공급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월별 집행실적 보고(일자리) ● 착수보고 및 연말 결과보고 (자체 평가, 서비스 효과, 회계 등)



□ 전담팀(계) 구성 운영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전담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전담팀(계)을 구성하고, 시·군·구청장은 ‘행복e음’ 구축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담당부서 내 사업전담인력 배치 요망
 - ※ 전담팀 구성 여부, 전담자 배정 여부 등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평가에 반영
- 시·도 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지침 작성, 홍보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 선정·관리 등은 시·군·구청장이 담당
- 시·군·구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주관 지자체가 사업 지침, 제공자 등록 등을 총괄
 - 다만, 주관 지자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간 협의 하에 주관 지자체를 별도 지정하거나 지자체 조합 형태나 별도 사업단 형태의 운용도 가능
- 지역 여건상 전담팀(계) 구성 또는 사업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시·도는 복지정책과(또는 사회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봉사과), 시·군·구는 사회복지과(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 시행 및 예산확보 등 업무를 총괄 수행하되, 필요시 이용자별 담당부서에서 사업 시행도 가능

□ 사업간 연계 조정

- 사업간 연계 및 중복 조정 등을 위해 각 사업 참여 부서별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원칙(관련 회의자료 별도 보관)

1 본인부담금 관련 제도

- 최소 본인부담금 적용을 통한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 (가격 10만원인 사업은 1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 책정
 - ※ 서비스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
-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차등화 확대
 - (대상) '12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아동비전형성지원 서비스에 시범 도입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아동 대상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 ※ 2015년부터 아동대상서비스 이외에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에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 (적용률)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 가격 대비 10~40%로 차등화
 - ※ 단, 소득기준이 상이한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최대 30~40%까지 본인부담금 설정

자) 【아동대상사업 등 본인부담률】

사업유형	기준 가격 대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 차상위, 평균 소득 50%이하 (1등급)	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2등급)	평균소득 100%초과~ 120%이하 (3등급)	평균소득 120%초과 (4등급)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 등			-	
아동건강관리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10%	20%	30%	4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0%	-

※ 위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2 가격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제공기관간 경쟁 유도

-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단계적 전환('13년은 희망 시·도를 지정하여 시범적용, '14년부터 시·도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 결정)
- 기준 가격은 설정하되,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른 자율성을 기준 가격 대비 최대 20% 범위에서 허용
 - ※ 1개 제공기관 내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복수의 가격표 구성 가능

- (적용대상 사업) 가격 규제 완화 시 **품질 저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에 적용

차)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단위: 천원)】

● 사업 전체의 가격구조

구 분		이용시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4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 50%	주 50분	160	144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평균소득 50%~100%			128	
	평균소득 100~120%			112	

● 제공기관별 가격구조(허용 범위 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구 분		내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A	선택 1	제공인력 : 경력 10년 이상	200
	선택 2	제공인력 : 경력 5년~10년	180
제공기관 B	단일 운영		190

* 제공인력의 전문성(임상경력, 공인 자격 등)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가능

1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같은 지역 내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중복 이용 방지 및 사업 규모화 도모
- 공공 인프라 확대에 따른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 차별성이 미흡한 경우 사업 축소·폐지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시]

-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은 청소·방역 사업
-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및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서비스
- 타 사업과의 중복 소지가 있는 단순 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 단,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로 재구조화 가능
- 현장점검 결과 사업중단을 권고받은 사업
- 학습지 위주 서비스, 제공기관 패키지 상품 제공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독서 지도서비스
- 기타 자체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사업

- 여러 시·군·구의 유사 사업을 시·도 개발사업으로 광역화 시 인센티브 부여
 - 시·도에서 사업 범위 확대나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 필요 시 시·도 개발 사업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가능
 - 농·어촌의 경우 인근 도심 지역 전문기관(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한 파견형 모델 및 지역 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자체적 역량을 활용한 제공기관 육성 계획 검토
 - ※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 통합 실적 및 사업 광역화 실적은 추후 성과평가 시 “계획의 적절성”에 반영
-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흡한 사업 예산 감액



8

신규 사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1 2015년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 2015년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토대로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 마련
-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16년도 지침 개정시 사업모델 수정 및 전국 확대 등 검토

※ 2015년 신규사업 현황

신규사업명	시행지역	사업내용
중소기업근로자 통합서비스	충북 (청주·진천), 경기, 경북(안동) 대구(달서)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 협력한 근로자 우선선정 ○ (서비스 내용) 근로자에 대한 정서지원, 직장내 대인관계 증진, 라이프 코칭, 건강힐링서비스, 부부관계증진,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등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충북 (청주·진천)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1세~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아동 상호작용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 (서비스 내용)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활동 등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하프타임	전북 (전주·완주 익산·정읍)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무요원 ○ (서비스 내용) 진로탐색 및 조정, 직무적응, 정서순화 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경북 (김천·청도)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의 만 6~18세 중 척추측만증 아동·청소년 *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해당 학교장(보건교사)가 추천 ○ (서비스 내용) 기초검사, 교정운동 및 운동처방, 개인별 상담, 건강 및 홈트레이닝 방법 제공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등 종합서비스	경남	○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원폭피해자 ○ (서비스 내용) 원폭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정서 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대인관계/문화체험/가족캠프 등 다양한 종합 프로그램 제공

II 자체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1 자체개발 사업계획(기준정보) 수립

① 수립주체 : 시·도지사(광역개발) 또는 시·군·구청장(시·군·구 자체 및 공동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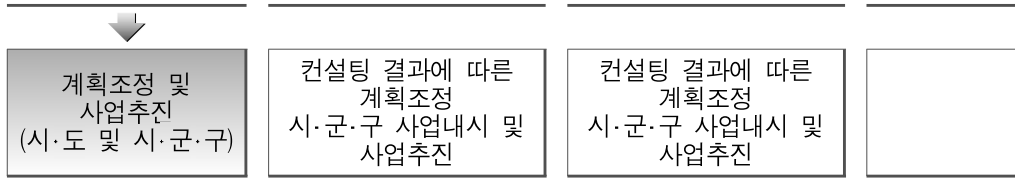
② 기본방향

-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방향 및 시·도 포괄보조 사업 방향에 맞추어 사업계획 수립
 - 기존사업 : 기본방향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 신규사업 : 사업 유형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업 개시 전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바우처 생성 정보, 바우처 단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사업별 서비스 제공 계획(기준정보) 수립·시행

③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 매년 시·도지사는 사업시작 전 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 확정

구 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산처리
사업추진계획 시달 (보건복지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문시행
사업평가 및 수요·공급 조사 (시·군·구, 시·도)	기존사업평가 및 수요파악	지역복지육구 파악 및 신규아이템 개발	시·도 및 지자체 자체실시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보완(현행화)	사업계획서 수립	
↓			
시·도 조정 (시·도)	구조조정 총괄확인 및 사업조정	시·도내 우선순위 심사	
↓			
사업계획 확정·통보 (보건복지부)	시·도 구조조정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확정	시·도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확정	



④ 자체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 700여개의 자체개발사업을 주요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사업군별 필수 서비스 절차 및 예산 집행기준 등 설정

카) [사업 분류체계 및 가이드라인]

사업분류	사업유형	가이드라인
아동 재활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의뢰 또는 사정평가도구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선정 · 발달 상태, ADHD 척도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 실시 · 발달 지연 또는 문제가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개별 재활 계획 수립(상담 및 놀이·언어·미술·인지 분야 중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 · 사후 진단평가 및 주기적인 부모 상담 실시
아동 역량 개발	아동비전형성지원 아동 리더십, 멘토링 아동 문화활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잠재력인 역량 개발 및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표현활동 등) ※ 단순 학습, 단순 체험만 제공하는 사업 배제 · 역량 강화 진단지표 설정 및 사전·사후 아동의 자존감·사회성 검사 실시 · 주기적인 부모 상담 실시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모델에 따라 실시 · 라이프코칭(부정적 감정처리기술, 타인과의 관계기술 등)포함 · 단순 여가성 활동 지양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후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취업 지원 등 실시
신체 건강 관리	시각장애인 안마	· 표준모델에 따라 실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표준형) 기타 맞춤형 운동처방 비만아동건강관리 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성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으로 설계 · 분기별 건강진단 실시 · 이용자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가능성 확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장기요양 등급 외 a·b에 한해 지원 · 신체능력에 대한 주기적 진단 포함
정신건강 관리	정신건강토탈케어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등	· 치료적 서비스를 제외한 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통원 지원, 사회적응 지원 실시
가족역량 강화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지원 근로자 정서지원 통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학습·체험·여가 활동 배제 · 개별적 상황을 반영한 상담 포함 · 타 사업 사각지대에 한해 지원

- 신규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하고, 기존사업 중 가이드라인 불충족 사업은 2년에 걸쳐 구조조정
- 주요 사업유형은 복지부 지침 상의 표준모델 준수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사업별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기준정보 상 이용자 특성이나 서비스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은 정책방향 및 표준모델, 해당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각각 “가구특성”, “서비스 내용”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술
- 지원기간·서비스 가격은 표준모델을 준수
 - 단,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기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란에 근거(문헌자료 등)를 기재
 - 가격규제 완화 대상 사업에 한해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에 따른 기관별 가격 상향 조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은 상향 불가
- 타 부처 및 타 복지사업과의 서비스 내용, 대상자 등 유사중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하고, 대상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전체의 효과 제고 및 선심성 사업 실효를 위한 예산 배분 기준 설정
-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사업별 서식 제14호, 15호, 16호)
 - ※ 사업별 사업계획(기준정보)은 전자바우처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동 사업계획(기준정보)를 가급적 준수하되, 지역 여건,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정보변경 가능
 - ※ 다만 바우처 및 단말기 관리,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 등 관련 사항은 변경 불가

⑤ 사업계획(기준정보) 작성 요령

주요 항목	작성 요령
① 사업분류	[첨부1] 사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
②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서비스 전체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정부지원금(천원) : 서비스 이용자별로 바우처 생성 시 매월 정부가 지원할 금액



주요 항목	작성요령
③ 이용자별 지원기간	<p>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로 최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된 기간 내에서 서비스의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이용자 자격관리 등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별 지원 기간 변경은 불가(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후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참고) 이용자 지원기간을 8개월 → 12개월로 변경시 기존 이용자 전체를 중지 전송 처리 후 신규로 이용자 정보를 입력·재전송해야 함
④ 생성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를 의미 (1개월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 등) ※ (예시) 2개월마다 생성되는 바우처의 경우 최초 바우처 생성이 3월인 경우 이후 5월, 7월, 9월, 11월에 각각 바우처 생성 - 사업관리 용이 등을 위해 가급적 격월이나 3개월 등 주기적 생성은 지양 (매월 생성되도록 사업 개발·관리)
⑤ 소득	<p>사업별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 기재 (예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20%이하 등</p>
⑥ 연령	<p>사업별 이용자 연령(생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만 연령(생년)으로 명확하게 표기(초등학생, 중학생 등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
⑦ 가구특성	<p>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특성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추천서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⑧ 우선순위	<p>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순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 외에는 저소득층 우선지원 배제
⑨ 제공장소 및 방법	<p>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 분류(서비스 장소 명기)
⑩ 서비스 내용	<p>제공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월 ○회), 주기 1회당 제공 시간을 명기</p> <p>(예시)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중운동서비스(아쿠아로빅) : 월 12회×1회(90분) 2. 건강상태 점검 : 분기1회(검사결과지)
⑪ 개발주체	<p>서비스 실시주체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시·도개발(시도 전체 시행), 시·군·구공동개발(2개 이상 시·군시행), 자체개발
⑫ 안전관리기준	<p>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 기준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의 안전관리기준 내용 참고

2 사업계획 변경(기준정보) 관리

① 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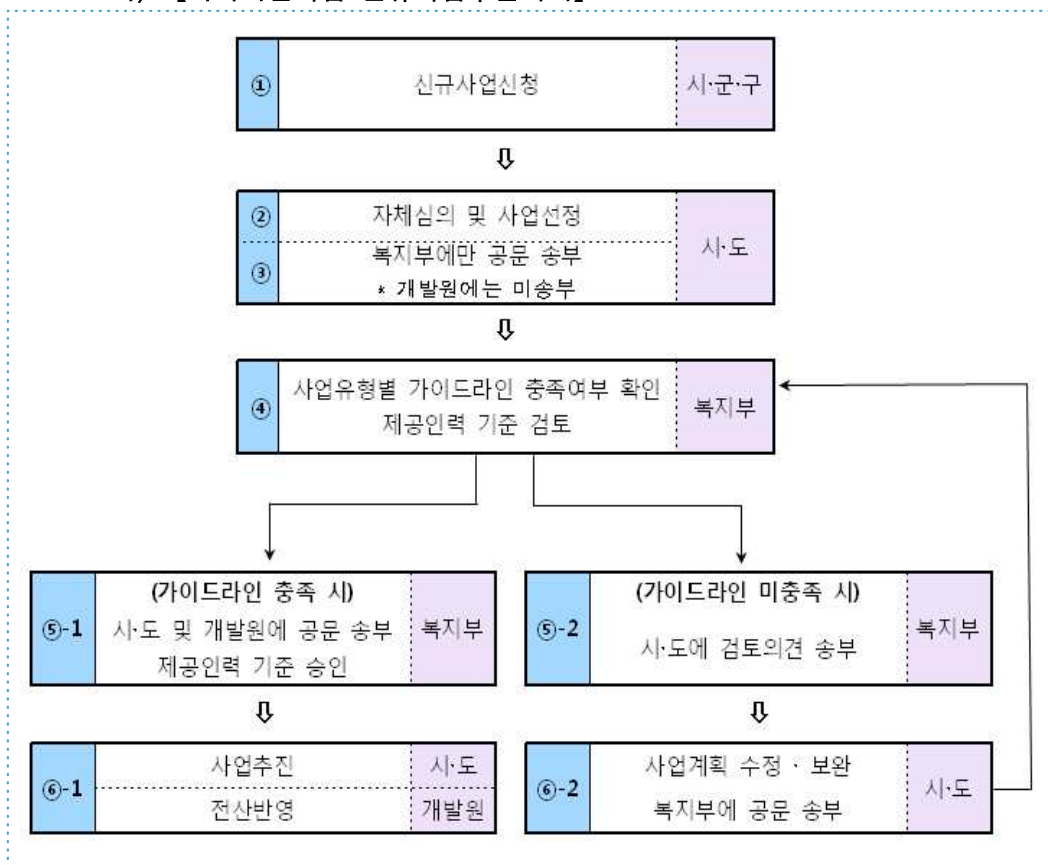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지자체)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시·도, 시·군·구), 사업 승인(시·도)

- (복지부) 기준정보 주요사항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승인

※ 신규사업 신청 시 첨부서류 : 사업별서식 제5호 및 제14호~제16호

타) 【자체개발사업 신규사업추진체계】



※ ⑥-2 단계의 경우 다음 번 변경 일정 시 검토·반영



② 기존사업 변경 절차(변경 기준정보는 신규 이용자부터 적용)

● 기준정보 변경 절차

- (주요사항) ‘① 신규사업’ 추진절차에 준함

※ (주요사항)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대상자별 지원기간, 소득, 연령, 가구 특성, 서비스내용, 제공주기, 서비스시간, 재판정, 자격기준, 집단규모, 생성주기

- (일반사항) 시·도는 기준정보 일반사항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복지부 및 정보개발원에 공문 통보 → 전산 반영

※ (일반사항) 주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사업명 등)

● 변경요청

- (주요사항) 시·군·구 신청 → 시·도 심의 후 복지부에 승인 요청

- (일반사항) 시·군·구 신청 → 시·도 심의 후 복지부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공문으로 반영 요청

※ 기준정보 변경 시 첨부서류 : 사업별서식 제5호 및 제14호~제16호

● 기준정보 관리

- 개발원에서 기준정보 전산반영 및 복지부에 월별 실적 보고 시 기준정보·자격기준 변경사항 보고

● (제공인력 자격기준) 복지부 승인 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참조

- (변경절차) (시·도) 변경신청 → (복지부) 검토·승인(시·도 및 개발원에 공문) → (개발원) 전산반영 → (지자체) 사업추진

※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시 첨부서류 : 사업별서식 제5호 및 제12호

③ 변경주기

● 매년 사업기준정보는 전년도 12월 중순까지 확정

● 서비스서비스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주요사항”(복지부 승인)은 가급적 사업연도 내 변경 불가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기 1회 변경 원칙

※ 신규사업 시행 등 부득이하게 기준정보 주요사항의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가
 변경사유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수시 조정

- 탄력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반사항”은 시도별 상시 변경 가능(변경 후 복지부 및 정보개발원에 공문 통보)

파) 【신규사업 신청 및 기준정보·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일정】

구 분	1차	2차
변경신청(시·도 → 복지부)	~전년도 11월 중순	5월 중순
승인여부 검토(복지부 → 시·도, 개발원)	전년도 12월 중순	6월 중순
변경사항 적용	2월	8월

※ 일반사항의 경우 복지부 검토 절차 없이 개발원에서 바로 전산반영

④ 기타사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 적용 월 1일에 반드시 전산반영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
- 기존 이용자는 기존(변경 전) 기준정보를 적용 받으며 변경 기준정보는 신규 이용자부터 적용
-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기준정보 변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Ⅲ 이용자 선정



1 선정 절차

구분	주체	내용	비고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 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 공통서식 제1호 및 제1호의 4 참조 - 사업별 제1호 서식 참조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 조사 - 사업별 일반 요건 확인 (증빙서류 업로드)
↓			
소득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
↓			
이용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결과 전송(매월 말일 18:00까지)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 예산상황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직권으로 재신청가능
↓			
통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공통서식 제6호 - 사업별 서식 제7호

2 이용자 신청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 그 밖의 관계인 : 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보호 동의 필요)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 사회복지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가급적 사업시작 시기(1~2월)만이 아니라 매분기 이용자 모집(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을 실시하여 연중 발생하는 수요 및 연계기관(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의뢰에 대응(지원기간 12개월인 사업)
 - ※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1분기에 과도한 이용자 모집을 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시도는 차년도 예산배분시 예산 감액 검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방문 신청

- 읍·면·동 담당자는 사업별서식 제1호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것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 공통서식 제1호 및 공통서식 제2호
- 바우처 이용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사업별서식 제1호
- 기타 증빙 서류



- ※ 행복e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 의사소견서, 비만 지수·심리 검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3 상담 및 욕구조사

- 이용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장애 여부 및 정도, 건강상태, 주거 여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욕구조사는 가급적 간소화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 의뢰 가능
 - 다만, 서비스 성격상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욕구 조사 의뢰 가능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복지요구의조사),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3(복지요구의조사및서비스 제공의 결정통보)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4 소득 조사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임(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형제(특히 아동의 경우)등이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맞(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맞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소득 조사

- 소득 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하여 산정)
-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월 6개월 간 평균하여 산정
 - ※ 미확인 및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비치(휴직증명서 등)
- 휴직자의 경우 직전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 6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은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
 -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75
- 노인대상(만 65세 이상)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전국가구평균 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이용자를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가능

□ 기타 상기관련 조사 및 정보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용자는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 관련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자격변경으로 이동)

□ 바우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재판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판정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새로 확인

5 이용자 선정

□ 선정기준

- 일반(육구)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등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

※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업로드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 기준 적용(표 참고)

하) 【소득예외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기준 없음
장애인·노인(만 65세 이상) 대상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대상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거)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¹⁾	1,538	3,099	4,423	4,974	5,265

주1) 통계청 「가계조사」, '13년 4/4분기~'14년 3/4분기 평균값

☞ (참고자료 1)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직장/지역/혼합보험료 수준)를 참고하여 이용자 선정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붙임의 연도 기준표 참고)

※ 이용자 선정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만 나이를 별표 생년기준에 따라 운영 (예: 만 8세~ 만13세 아동대상 사업은 2007.1.1.일~2002.12.31.일 출생자를 해당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간주)

- 선정우선순위 : 사업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는 지역의 수요 및 예산상황을 감안 지자체의 장이 정함

□ 선정권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행복e음에 입력한 소득, 연령, 욕구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자 선정
 - ※ 단,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한 사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분야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는 아래 연계 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자 선정 지원 및 사업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 **(기본방향)** 주요 공공 전달체계를 통한 대상자 연계·우선 선발로 실 수요자에 서비스 지원 및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의성 증진
- **(연계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시 연계대상 사업에서 발굴하여 추천 하는 대상자를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 선발하여 지원
- **(연계대상)** 드림스타트(아동),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 의료급여(노인건강)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실무자간 협의하여 결정
 - * 주요 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과물입치유 등
 - 정신보건센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달케어 서비스
 - 의료급여 사례관리 :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연계사업 및 비율 등)** 사업별로 상이

대상기관	연계사업	연계비율	대상지역	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지자체 담당자간 협의하여 결정	사업별 예산의 10% 내	드림스타트 센터설치지역	분기별 공문 추천
정신보건 센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u>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u>	30%	서비스 시행지역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발급
의료급여	- 맞춤형 운동처방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	서비스 시행지역	월별 공문 추천

- 시·군·구청장은 행복e음을 통해 이용자 선정결과를 매월 말일 18시까지 한국보건 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용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와 [사업별서식 제8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 “부적합”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이용자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을 이용자에게 통보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 바우처 사용 관련 안내사항

- 2015년부터 회당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각 시·군·구청장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 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 대기자 관리

- 욕구, 소득, 연령 등 이용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부적합”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대기자로 선정관리
- 향후 추가 예산확보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담당자가 직권으로 상정하여 선정
- 대기자 관리는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실시(2016년 사업 추진시에는 별도로 신청)

- 신청인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기한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 [공통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함



IV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서비스 신청

- 이용자 통보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내 제공기관 선택
 -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현황자료에 대한 정보 안내
(예시 : 이용자가 제공기관 선택에 제공기관 품질관리 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등에 안내)
 - 해당 제공자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3 서비스 이용 제한

1. 서비스 이용 제한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 단, 1가구 내 2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
 - ※ 실제 이용 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적합)를 받은 기준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중복수혜 불가(동시 이용만 불가)
 - 분류 1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분류 2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비만)아동 건강 관리
2. 서비스이용자격 상실(당해연도 사업 참여 불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2. 본인부담금의 2개월간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권을 직접 확인한 경우 3.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전안내 동의서로 같음하여 직권 조치 4.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 제공기관에 카드 등을 대여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 예정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1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용어의 정의】
◇ 서비스 지원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 상에 반영된 사업별 지원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동안 지원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자 자격기간 : 선정된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서비스 지원기간의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 지원기간을 사업계획 수립시 표준모델을 참고 하여,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서비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개별 사업별 서비스 지원기간은 반드시 기준정보(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 이용자 자격기간

- 이용자 선정 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자자격기간은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사업별 서비스 지원기간으로 함.
 - ※ 서비스 지원기간이 12개월인 사업의 경우 3월에 이용선정 후 익년 3월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서비스지원기간이 6개월인 사업의 경우 3월 이용선정 후 9월까지 이용자격이 유효)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 말일 18:00 이전 전송 기준) 익월
 -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자격 소멸 시점 : 서비스 개시 월부터 소멸 시작
-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개시월 부터 지원기간이 소멸되어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 이용자에게 지원기간을 명시하고 소멸시점을 필히 주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지원기간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예) '12.3.10 신청 전송(바우처 생성 '12.3.31)이 이루어진 이용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이 8월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월은 4월임(지원기간 4개월 소멸)

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 재판정의 개념

- 이용자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평생 1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효과극대화 등 지속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최대 5년까지 가능)

□ 재판정 대상 사업

- (재판정 4회)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최대 5년)

- (재판정 2회)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최대 3년)
- (재판정 1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정신건강, 아동비전,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근로자정서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최대 2년)
- 재판정 대상사업 및 재판정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별 기준정보(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 재판정 대상 이외 사업 : 지원기간이 만료된 기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 절차를 거쳐 해당월 종료자 대비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재판정 대상자 지원기간 연장 절차 및 처리

- 재판정 절차
 - ① 시군구 종료안내 ⇒ ② 이용자 재신청 ⇒ ③ 이용자 자격해지 ⇒ ④ 시·군·구청장 재판정 및 선정 ⇒ ⑤ 이용자 선정통보

【재판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 ① 종료예정자 명단 통보(개발원 → 시·군·구)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
- ② 이용자 서비스 종료 및 재신청 안내(시·군·구 → 이용자)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
- ③ 종료 예정자별 일괄자격해지(개발원) : 지원기간 종료월 11일
- ④ 대상자별 재판정 및 결과 전송(시·군·구 → 개발원) : 종료월 11일 ~ 말일 18시
- ⑤ 이용자 선정통보(시·군·구 → 이용자) : 종료월 11일 ~ 30일

* 재판정·전송 등 시·군·구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의 자격은 자동 해지됨

- 재판정 처리
 -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용자가 추가지원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신청
 -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함
 - * (우선순위 예시) 서비스 욕구·위험도가 높은 경우,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출력한 재판정 연장 통보서(☞사업별 서식 제9호)만 효력있는 연장 통보서로 인정
- 재판정 시점에서 소득, 욕구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

3

이용자격 관리(등급조정)

1 등급조정

- 이용자의 세대구성 및 소득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복e음 상 자료 및 제출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경 처리
 - ※ 이 경우 자격변동이 있는 익월부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 ☞ 자격조사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2 자격변동(전·출입)

-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 행복e음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바우처 생성전)는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 ※ 전입지 시·군·구 담당자가 전출지 시·군·구에 부적합 처리 요청 불필요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함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자격관리

- 시·군·구 담당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리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 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적발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여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중지요청이 있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전출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 이용자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V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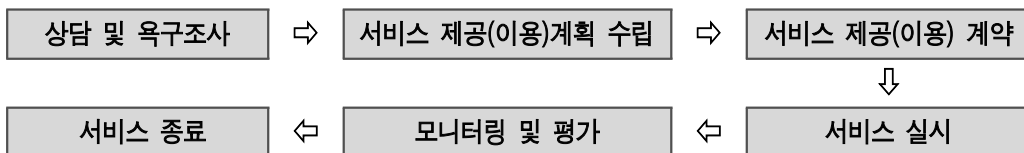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관할 시·군·구청장이 복지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
- 관할 시·군·구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자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음

2 서비스 실시절차

1 서비스 실시 절차



2 상담

- 초기상담(intake)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사업별 서식 3호)
-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특성 등을 파악
- 필요 시 별도 조사표를 사전에 준비, 조사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반영

3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사업별 서식 제4호)

- 상담시 파악된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이 작성
 - 내용
 -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방법, 제공횟수, 제공자 및 제공인력, 제공 일정,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 2015년부터 회당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각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 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5(보호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등)

4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정의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당사자
 -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 주요 계약 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쌍방간 부당·부정 시 계약 취소 (바우처 지원 중단)

□ 계약 절차

- 이용자를 “갑”으로 제공기관을 “을”로 계약서 작성
 - * 서비스 제공계약서(예시) : 사업별 서식 제10호
- 계약시 이용자별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
 -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 사업별 서식 제4호
-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등록

5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실시

-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후 검사 실시(필수)
-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 ※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일정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일까지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사업별서식 제11호)에 기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 기록지 작성 시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확인 등 필수
 - * 제공기관 자체 양식(필수 작성내용 포함) 활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이용)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6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보관
 - * 단, 6개월 미만 단기사업은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상 일치여부, 서비스 제공 충실도, 바우처 결제의 적절성, 서비스 이용효과, 모니터링 결과,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



7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종료 상담 실시

-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초기상담시 사용했던 검사도구 등을 활용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 종료 시기

- 개인별 자격 유효기간 종료
-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만료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종료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 이용자가 계약해지 할 때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 통지

□ 종료 절차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 서비스 종료안내문(예시) : 사업별 서식 제6호 및 제7호

VI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운영·관리

① 회계관리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도 개별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
 - ※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본인부담금 통장 별도 관리)
-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단말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
- 제공자가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인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
-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거나 요양급여, 건강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과 동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음(동일 장소에서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너) 【결제허용시설】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비고
노인	주거복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
아동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예시) 결제허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시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동 기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으나, 아동양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제외)은 결제 허용 시설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보관



- (수입)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 등 모든 수입과 관련된 서류
- (지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모든 지출과 관련된 서류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 등록 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성
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② 기관운영·관리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 제공시설 및 이용자 안전기준 마련(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
 - 돌봄(체험 포함) 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 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 **제공인력 교육관리**
 -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가능
 -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전문기관의 집합교육, 지자체 또는 지원단이 주관하는 집합교육, 외부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제공기관이 참여하도록 관리
 - 가. 신규 인력 : 소양교육(5시간) 및 직무교육(8시간)

더)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안)】

구 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 간	5시간	5시간
내 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방 법	-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특이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정보개발원 통합교육, 복지부 집합교육, 지원단 컨설팅을 참여시간 인정	

러) 【직무 교육의 주요 내용(안)】

구 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 간	8시간	8시간
내 용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교육 - 회계, 노무 관련 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서비스 관련 전문 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서비스 관련) - 사회복지 상담 기초 - 제공인력 의무와 책임 등 제공기관 운영계획에 직무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방 법	- 지역사회 지원단의 관련 교육 - 보건복지부 주관 관련 교육 -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학교 등의 위탁 유료 교육 실시	- 기관 자체 교육(간담회 포함) - 지역위탁 교육 등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운영
특이사항		- 자격보유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인정

나. 보수교육 : 기존 제공인력에 직무 관련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 제공인력 교육계획 및 시행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관리



● **제공인력관리**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머)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조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제공기관 등록 후 최초 입력시 등록 후 14일 이내 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 제공기관 등록 이후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서류(자격증빙서류 등)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등이 아래의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

- 이용자 및 가족 등의 욕구에 맞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 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욕구·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서비스 제공 방문일시, 제공한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의무)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추가 서비스 구매 강요,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불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 확인(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제시 요청)
 - ※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제시 기피자에게 서비스 제공 금지

③ 제공인력의 참여 제한(확인 시 관련 비용 환수 조치)

- 타 법령이나 사업지침 등에서 근무시간 내 전임 또는 개별사업운영 의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 시간 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 불가
-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공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④ 관련서류 보관

- 등록관련 증빙서류 일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등 계약관련 서류
- 제공인력과의 계약관련 서류 일체
- 서비스 제공기록지(개인날인 포함)
-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 서류



2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의 원칙

- 제공기관의 대표는 종사자, 이용자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다양한 외부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시 모든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련 기관 및 이용자 보호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② 안전관리의 예방대책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제공시 마다 차량이용, 여행·체험활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안전교육

-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필요한 경우 교육 실시(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목적지 및 이동 간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이용자의 보호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함
-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 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체험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 여행자 보험은 소멸형(적립금이 없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여야 함

③ 분야별 안전

1) 시설물 안전

- (기관방문형)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혼합형)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자 안전 등에 위해요소가 있을시 시설관리 주체에게 즉각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여야 함



2) 이용자 안전

- (기관방문형, 혼합형)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시 일어 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필요
- (재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교육 필요

3) 제공인력 안전

- 제공기관의 장은 년2회 이상 제공인력에게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실시·상해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제공인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서비스 제공관련 안전

- (수상관련 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등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 전문가(인명구조사 등)가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차량운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차량운행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차량 및 운전자, 인술자(제공인력 외)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제공기관의 책임하에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안전

【돌봄 여행 및 체험활동 공통사항】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차량업체 등 계약 시 공통사항]

- 이용자 안전 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계약 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1) 준비단계

- 제공기관 운영자는 돌봄여행·체험활동에 관련된 현장정보(여행목적, 이동경로, 예정지, 비상연락망 등)를 사전에 제공인력 및 이용자(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차량이용 및 목적지 이동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인솔자 또는 제공인력이 응급처치, 이용자 안전관리, 교통사고 시 비상탈출 요령 등을 숙지하여 돌봄여행·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차량관련) 차량연식 및 정기점검 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등을 계약요건에 명시하고 확인하여야 함
 - (출발전) 차량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제공인력(또는 인솔자) 준수사항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안전문제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여행·체험활동 중 교육프로그램 인솔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공기관 인솔자는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 등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공기관 인솔자는 이동 또는 여행·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차량 탑승 이용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지도
 - 식수관리, 독·해충 피해 예방, 열사병·동상 등 날씨에 따른 건강관리 등
- 제공기관 인솔자는 차량이나 시설 사용 전에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교육활동 시의 안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3) 이용자의 준수사항

- 안전사고 발생시 인솔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 여행·체험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
-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체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솔자의 보고하고 인솔자의 적절한 조치에 따라야 함

㉔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관련 행정사항

-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안전예방 활동 강화
 - 해당 시·도는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기관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제공인력 및 이용자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5월, 11월) 모니터링 실시 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익월 10월까지 제출(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

시군구명	서비스 유형 (돌봄여행 또는 체험활동)	모니터링		비고
		점검 내용	결과 (이행여부)	
계				
○○시군구	예시)노인·장애인 돌봄여행 서비스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포함)		
		제공인력 교육실시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마련 여부		
		안전관련 보험가입 여부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인력 및 이용자 사전교육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차량관련 사항 이행 여부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인력 준수사항 이행 여부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이용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제출양식

(시도명)

(단위: 개소)

시군구 명	제공기관수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준 미실시 사유	비고
	돌봄	체험	점검내용	결과			
				이행	미이행		
계							
○○ 시군구							



VI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세~만 6세 ▷ 요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의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 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행복@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th> <th>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90%)</td> <td>16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횟수 48회)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제공인력 1인당 5명 이하 소그룹으로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 서비스</td> <td>발달기초영역</td> <td>-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td> <td rowspan="4">주 2회 (회당 60분)</td> </tr> <tr> <td>언어발달영역</td> <td>-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td> </tr> <tr> <td>초기 인지영역</td> <td>-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td> </tr> <tr> <td>정서·사회성영역</td> <td>-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 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td> </tr> <tr> <td>기타 서비스</td> <td>-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td> <td>-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③ 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④ 4단계 : 서비스 종결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사후 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 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 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2.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8세~만 13세 아동 ▷ 육구 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4]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정서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35%;">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th> <th style="width: 35%;">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10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90%)</td> <td>16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기본 서비스</td> <td>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어·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td> <td>주 1회 (회당 60분)</td> </tr> <tr> <td>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td> <td>주 1회 (회당 60분)</td> </tr> <tr> <td>3. 일반 연주회 관람</td> <td>반기별 1회</td> </tr> <tr> <td>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td> <td>반기별 1회</td> </tr> <tr> <td>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td> <td>제공기간 중</td> </tr> <tr> <td>4. 참여 아동 합주</td> <td>월 1회 이상</td> </tr> <tr> <td></td> <td>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td> <td>연 1건 이상</td> </tr> <tr> <td></td> <td>6. 사전·사후 진단 검사</td> <td>연 2회</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당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어·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4.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어·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4.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3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육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오루 기질)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추천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 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참고자료 4 양식)으로 판정)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음에서 확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할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기본)월 16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th> <th>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th> <th>3등급 (평균소득 100%초과~12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44,000원(90%)</td> <td>128,000원(80%)</td> <td>112,000원(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000원(10%)</td> <td>32,000원(20%)</td> <td>48,000원(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3등급 (평균소득 100%초과~120%)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3등급 (평균소득 100%초과~120%)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td> <td>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td> <td>월4회 이상 (회당 50분 이상)</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2. 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td> <td>필요시 수시</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조사(중요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 이상)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2. 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필요시 수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 이상)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2. 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필요시 수시											
⑥ 정신보건센터 연계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된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30%범위내에서 우선 선정												

항목	내 용
①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1:1) 가능(이용자에 따라 후기에는 1:3으로 운영 가능)



4.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육구기준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서비스 : 인터넷 중독 상담 관련 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 이수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및 그 분과학회, 기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 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th> <th>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10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90%)</td> <td>16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기본 서비스</td> <td>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td> <td>1회</td> </tr> <tr> <td>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td> <td>1회 (1일, 9시간)</td> </tr> <tr> <td>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td> <td>주1회 (회당 50분, 6개월)</td> </tr> <tr> <td>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td> <td>1회 (1박2일)</td> </tr> <tr> <td>5. 부모 상담 및 교육</td> <td>월 1회</td> </tr> <tr> <td rowspan="2">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td> <td>1. 인터넷·게임 대체활동(10인 이내) - 리더십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td> <td>주1회 (3개월)</td> </tr> <tr> <td>2.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td> <td>주1회 (3개월)</td> </tr> <tr> <td>부가서비스</td> <td>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td> <td></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계획 설계(심리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1. 인터넷·게임 대체활동(10인 이내) - 리더십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2.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서비스	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1. 인터넷·게임 대체활동(10인 이내) - 리더십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2.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서비스	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항 목	내 용
	②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서비스 종료 시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상담서비스는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4인 이내)로 실시하고 대체활동은 10인 이내 실시 가능
⑦ 안전관리기준 (대체활동)	○안전관리기준 - 대체 <u>아외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u>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5.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운동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 내외(정부 10.8만원, 본인 1.2만원) - 기타 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월 7만원 내외(정부 6만원, 본인1만원) ※ 성장축진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은 1만원 내외의 조정 가능, 기존 사업 중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사업은 월 14만원(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 내에서 조정, 단 여가-정서지원 활동은 정부지원 제외(본인부담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제공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서비스</td> <td>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3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p>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u>25인</u> 이내의 이용자 이용 가능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연령별 보험가입 필수) 																												
③ 제공인력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노인·장애인 돌봄여행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 (연 1회)</th> <th colspan="3">1박 2일 프로그램</th> <th rowspan="2">당일 프로그램</th> </tr> <tr>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td> <td>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td> <td>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td> <td></td> </tr> <tr> <td>서비스가격(A+B)</td> <td>180,000원</td> <td>165,000</td> <td>150,000</td> <td>74,000원</td> </tr> <tr> <td>정부지원금(A)</td> <td>155,000원</td> <td>145,000</td> <td>125,000</td> <td>62,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B)</td> <td>25,000원</td> <td>25,000</td> <td>25,000</td> <td>12,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65,000	150,000	74,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	125,000	62,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	25,000	12,000원
	구 분 (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65,000	150,000	74,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	125,000	62,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	25,000	1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분류는 전문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서비스 기간 : 평생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td> <td> <p>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형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p>2. 특화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티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td> <td>연 1회 (1박2일)</td> </tr> <tr> <td>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td> <td> <p>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p> </td> <td>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p>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형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p>2. 특화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티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p>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p>	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p>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형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p>2. 특화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티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p>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p>	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장애1~2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장애 3급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상이등급 6~7급,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전문돌봄인력과 별도) *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⑦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 돌봄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연령 : 만19세 미만 장애 아동 (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만 19세 이상인 자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세 이상의 경우, 재학 증명서류 별도 제출 기준 : 장애관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척수장애 및 근디스트로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평균소득 50% 이하</th> <th>평균소득 50%-120% 이하</th> <th>평균소득 120%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08,000원 (90%)</td> <td>96,000원 (80%)</td> <td>84,000원 (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2,000원 (10%)</td> <td>24,000원 (20%)</td> <td>36,000원 (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기간 : 12개월 / 재판정 4회(최대 5년까지 제공 가능) * 만 19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식이 속하는 달까지 서비스 제공 	구 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0%)	96,000원 (80%)	84,000원 (70%)	본인부담금	12,000원 (10%)	24,000원 (20%)	36,000원 (30%)
구 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0%)	96,000원 (80%)	84,000원 (70%)										
본인부담금	12,000원 (10%)	24,000원 (20%)	36,000원 (3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td> <td> <p>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p> <p>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p> <p>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p> </td> <td>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p>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p> <p>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p> <p>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p>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p>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p> <p>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p> <p>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p>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⑥ 집단규모	해당 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⑦ 기타	별도 공통서식 대체 서식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제공 계획서, 서비스제공 기록지)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기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사소수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4회 제공) 월 144천원 (정부 128천원, 본인 16천원) - (월 2회 제공) 월 72천원(정부 63천원, 본인 9천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기간 : 10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노인</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td> <td>· 마사지 · 운동요법</td> <td>· 지압 · 자극요법</td> <td rowspan="3">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장애인</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td> <td>· 마사지 · 운동요법</td> <td>· 지압 · 체형교정</td> </tr> <tr> <td>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td> <td>· 마사지 · 운동요법</td> <td>· 지압 · 체형교정</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서비스형)도 인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⑥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단, 정신장애인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육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점검 및 교육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부담 18만원 / 본인부담 2만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td> <td>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td> <td>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td> </tr> <tr> <td>부가서비스</td> <td>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td> <td>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③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정신보건 센터와 연계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단,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현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정부 14.4만원 / 본인 1.6만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p>▷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td> <td> <p>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p>2. 사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p>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td> <td>월10회 이상 (대면 4회 희당 60분 이상)</td> </tr> <tr> <td>부가서비스</td> <td> <p>1. 가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p>2. 여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td> <td>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p>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p>2. 사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p>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희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p>1. 가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p>2. 여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p>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p>2. 사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p>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희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p>1. 가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p>2. 여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p>2)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등록, 상담, 선별검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p> <p>② 2단계 : 전문상담</p> <p>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p> <p>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p> <p>⑤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p>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7세~만 15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p>▶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p> <p>▶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p> <p>- 비전형성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p>-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p>-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p>									
④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 기간	<p>▶ 서비스 가격 : (기본) 월 14만원 (정부부담80~90%/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th> <th>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26,000원(90%)</td> <td>112,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4,000원(10%)</td> <td>28,000원(20%)</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기간 : 12개월</p>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26,000원(90%)	112,000원(80%)	본인부담금	14,000원(10%)	28,000원(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26,000원(90%)	112,000원(80%)								
본인부담금	14,000원(10%)	28,000원(2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p>▶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p> <p>▶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향상 촉진</p> <p>※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p> <p>▶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p> <p>▶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서비스</td> <td>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td> </tr> <tr> <td> <p>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p> <p>▶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p> <p>▶ 서비스 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p>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p> <p>▶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p> <p>▶ 서비스 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p>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p> <p>▶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p> <p>▶ 서비스 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항목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27 454 544 499">구분</th> <th data-bbox="544 454 1323 499">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7 499 544 1126"></td> <td data-bbox="544 499 1323 1126"> <p>② 체험통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p>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td> </tr> <tr> <td data-bbox="427 1126 544 1167">부가서비스</td> <td data-bbox="544 1126 1323 1167">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p>② 체험통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p>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p>② 체험통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p>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육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⑥ 집단규모	<p>비전형성 기본 유형 : 1:1-1:3(농어촌, 도서지역), 1:1-1:12(기타지역) 체험통합형 : 1:1-1:3(농어촌, 도서지역), 1:1-1:12(기타지역) 학습모듈 : 1:1-1:3(농어촌, 도서지역), 1:1-1:6(기타지역)</p>						
⑦ 안전관리기준 (체험활동)	<p>○안전관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12.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부모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 3세 - 만 12세 ▶ 육구기준: 다문화가정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정각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월 12만원 내외 (정부부담 80~90%/ 본인부담 10~2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th> <th>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08,000원(90%)</td> <td>96,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2,000원(10%)</td> <td>24,000원(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됨 ○ 한글교육 위주의 우리말 배우기 또는 일상생활서비스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습지원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와 반드시 병행하여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학습지원 서비스 (필수)</td> <td>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td> <td rowspan="4">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td> </tr> <tr> <td>정서 지원 서비스 (필수)</td> <td>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td> </tr> <tr> <td>우리말 배우기</td> <td>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td> </tr> <tr> <td>일상생활 서비스</td> <td>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육구조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학습지원 서비스 (필수)	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	정서 지원 서비스 (필수)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우리말 배우기	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서비스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학습지원 서비스 (필수)	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											
정서 지원 서비스 (필수)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우리말 배우기	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서비스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항목	내 용
⑥ 안전관리기준 (체험활동)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13.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 기타 장애인 및 산모는 연령기준 없음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동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9만원 내외 (정부 17.1만원, 본인 1.9만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서비스</td> <td>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 3회 (회당 90분)</td> </tr> <tr> <td>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td> </tr> <tr> <td>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주 3회 (회당 90분)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주 3회 (회당 90분)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14.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내 ▷ 연령 : 만 65세 노인 또는 <u>기초연금 수급자</u>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관련 자격소지자 혹은 관련교육훈련 이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내외 (정부 16만원, 본인 2만원) ▷ 서비스 기간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및 은퇴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성찰과 노후 비전의 성취를 위한 내적 동기 활성화를 꾀하는 개별 라이프 코칭과 균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재무 설계프로그램으로 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이프코칭</td> <td>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1:1 위주)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설계</td> <td>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td> <td></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이용자별 노후 재무설계(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이용자별 라이프코칭 제공 ○ 4단계 :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사업평가(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5단계 : 사후관리(DB 구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라이프코칭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1:1 위주)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주 1회 (회당 1시간)	재무설계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라이프코칭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1:1 위주)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주 1회 (회당 1시간)								
재무설계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15.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별도설정 가능), ▷ 연령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요구기준 : 경도 (*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운동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6만원~10만원 내외 (서비스 내용별 상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이하</th> <th>2등급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th> <th>3등급평균소득 100% 초과 ~120% 이하</th> <th>4등급평균소득 120%초과</th> </tr> </thead> <tbody> <tr> <td>본인부담금</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간 : 12개월 	구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이하	2등급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3등급평균소득 100% 초과 ~120% 이하	4등급평균소득 120%초과	본인부담금	10%	20%	30%	40%							
구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이하	2등급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3등급평균소득 100% 초과 ~120% 이하	4등급평균소득 120%초과														
본인부담금	10%	20%	30%	4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 내용 (필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td> <td> <p>제공유형 참조</p> <p>*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 기적 제공(필수)</p> </td> </tr> <tr> <td rowspan="5">서비스 제공유형 (7개 유형 선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연계형(집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td> <td>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td> <td>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td> <td>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 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td> <td>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td> <td>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td> </tr> </tbody> </table> <p>3)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시작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이용자에게 제공) ○ 4단계 : 월별 건강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 ○ 5단계 :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부모교육 실시 ○ 6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7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p>제공유형 참조</p> <p>*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 기적 제공(필수)</p>	서비스 제공유형 (7개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연계형(집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 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p>제공유형 참조</p> <p>*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 기적 제공(필수)</p>																
서비스 제공유형 (7개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연계형(집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 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⑥ 집단규모	<p>기관방문형 : 1회당 서비스 제공은 최대 15명으로 하며, 초과시 분반 혹은 10명당 1명의 보조교사 배치</p> <p>가정방문형 : 1회당 서비스 제공은 3 4명까지로 제한(1:1~3 4)</p>																	



16.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신규모델)

항목	내 용				
① 목적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신체·정서적 안정, 근무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소득기준 없음 (별도 설정 가능) ▷ 육구 기준 :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 (1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 기업체에서 추천에 의한 근로자 우선 선정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서비스내용별 적합한 인력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이내 (정부부담 60~90% / 본인부담 10~4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3등급 평균소득 100%초과~120%	4등급 평균소득 120%초과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96,000원(6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64,000원(40%)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1·2번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여 육구에 따른 3가지 이상 서비스로 구성)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지원서비스 : 직장생활 및 가정의 관계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 불안,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부대화, 부모자녀 상담 등 (미술치료, 음악치료, 레크레이션, 심리검사 등) ② 직장내 대인관계 증진 및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동기강화, 자신과 타인 이해, 의사소통, 관계형성 유지 프로그램 - 직장내 자신의 목표설정, 성과관리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③ 라이프 코칭 서비스 : 직장생활의 근무의욕 고취와 자기계발을 위한 서비스 - 라이프형성, 자기개발, 감정표현, 무의식놀이, 관계탐색 등 - 문화여가를 위한 다양한 악기(하모니카반, 기타반, 간기연주반)연주와 다양한 작품활동, 여가활동을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향상 ④ 건강힐링서비스 :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서비스 - 기초체력, 관절가동력, 체성분검사 및 맞춤형 운동상담 - 맨손체조, 건강체조 등 유연성,교정, 근력강화 스트레칭 - 클수영, 에어로빅, 라인댄스, 세라밴드, 짐볼, 필라테스, 요가, 헬스, 스트레스리닉 등 ⑤ 부부관계증진서비스 :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 집단상담을 통한 부부소통 프로그램 - 역할극 테라피를 통한 배우자 이해 - 부부동반 등산, 부부캠프, 부부체험 프로그램 등 			주 1회, 월 4회 이상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 가족상담 서비스(가족대화 및 소통, 가족관계향상, 가족이해, 긍정적 정서향상을 포함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부동반 등산, 가족단위 역사문화체험, 가족단위 캠프 등 부모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관계형성 및 공감대 형성 - 부모 자녀 동반 가족 캠프 등 			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근로자 변화를 체크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상담서비스는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4인 이내)로 실시하고 단체프로그램은 10인 이내 실시 가능
⑦ 안전관리기준 (체험·캠프활동)	○안전관리기준 - 체험·캠프 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17.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신규통합모델)

항목	내 용		
① 목적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감소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1세~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욕구기준 : 부모-아동 상호작용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소지자 중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5만원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35,000원(90%)	120,000원(80%)
	본인부담금	15,000원(10%)	30,000원(20%)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아동과 부모에게 상담 및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지원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유형 검사 서비스 - 가족역할 정립 서비스 -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양육 스트레스 검사(사전, 사후) - 아동발달 기초검사(사전,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월 1회 주 1회(20분) 연 2회 연 2회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 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 	주 1회(50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보고서 : 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부모 및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검사 시행) ② 2단계 : 사전검사 실시(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아동발달 기초검사)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④ 4단계 : 매월 교육활동 내용 부모에게 제공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아동발달 기초 검사)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팀(부모+아동) 이용 가능)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제출 		



... 제 3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I. 제공기관 등록 _ 125

II. 제공기관 정보관리 _ 136

III.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_ 137

IV. 현장점검(검사, 법 제32조) _ 142



I 제공기관 등록



1 등록제 개요

-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 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1)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2) 활동보조서비스(집단활동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2 인력·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 ※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별도 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가능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제공인력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보유자

3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4 제공자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등록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심사	● 시·군·구 사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시·군·구 사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결정·통지	● 시·군·구 사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의 공지	● 시·군·구 사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1 등록 신청

1)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사업 담당과
- 신청 및 작성 주체 :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공통양식 제1호 참조)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공통서식 제7호)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나) 사업별 제출서류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공통서식 제7호의1)

-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버)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총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정관 등 필요시 요구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⑥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⑥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⑦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⑧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참고 1) - 주요 민간 자격 현황(참고 2)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공통양식 제2호)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과 계약 체결 시 일자리 참여 정보를 전자마우처시스템 및 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는 데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공통서식 제14호)

2 등록 접수 및 심사

-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 방법**

[공통사항]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17조 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7호의 경우 정보개발원에 확인 요청)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보완** 지시
-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확인]

-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과 제공자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 ※ 서비스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내용, 횟수, 단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
- 제공인력에 대한 추가 검토
 - ※ 해당사업의 사업 계획서의 프로그램 내용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 충족이 필요한 최소 인원 3명 확인
 - ex) 기본 서비스프로그램이 클래식 프로그램 + 정서순화프로그램인 경우,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하며,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없이 서비스 제공 불가

●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법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이를 명시하여 등록증 발급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등록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명기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신청기관에 안내

● 등록의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며, 동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절차 없이 휴업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

●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4 등록증 발급

●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별도 기재

● 제공자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등록번호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5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준용)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변경사항 확인 후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발급(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

6 등록내용의 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5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제공기관 등록 관련 안내사항】

①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 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 이용권법 등록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중 “전용면적”이라 함은 해당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 동일 장소(강의실)에서 평생교육원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하는 것은 “전용면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 6조에 의한 학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

②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제공자)의 등록 가능 여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전국 동일한 제공인력을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제공인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제공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공기관 등록기준은 하나의 제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최소의 기준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실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제공인력의 신고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제공자 등록 취소요건)

④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도 포함되는지 여부

-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 포함되며, 제공기관 등록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II 제공기관 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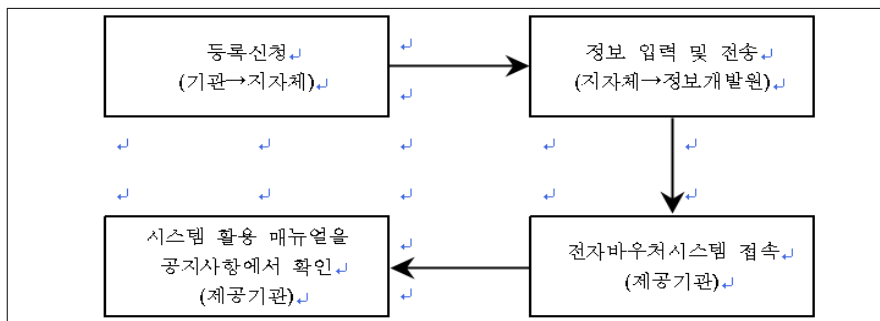


1 신규 등록

- 제공기관 등록접수 후 등록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제공기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참고하여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의 정보를 입력
 -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서비스비용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사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지급 계좌번호) 등을 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함께 전송

※ 제공기관 등록 및 정보전송 매뉴얼 : 참고자료 3

서) 【제공기관 정보관리 흐름도】



2 변경 등록

-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에서 변경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 제공자의 명칭, 지급계좌,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전송



Ⅲ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 제공자 준수사항

1 정보공개

- 제공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제공인력 현황(성별, 연령 및 경력 포함), 시설 및 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공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 없이 수정

2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빙서류 제시 요청 가능
-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 위반 시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 (VT-800, VT-900, VT-11(신형단말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 폰)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4,400원~7,700원을 지불
- 제공기관이 결제한 바우처는 10일단위로 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급내역 조회 가능
 - ※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
- 제공기관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기관 정보가 등록되면 바우처 결제 가능
-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 시 응소
 - 교육주체는 정보개발원
- 제공기관은 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보유해야함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의 서비스(사회보험료 등 포함) 정보를 매월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및 주요활동지역 정보를 등록(변경 시 변경등록)하여 관리

어) 【등록후 제공자 업무처리 절차】

단계	업무 내용	기한
제공기관 정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정보 정합성 확인 ● 등록 정보오류 시·군·구로 제공기관 정보 수정을 요청 * 시스템 화면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기본정보 조회/수정 	등록 후 7일 이내
↓		
제공인력 정보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등록 	등록 후 14일 이내
↓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을 매칭 * 시스템 화면 : 대상자관리 >> 서비스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 	서비스 실시 전
↓		
단말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개통 후 신청 취소는 불가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 이전 단계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1599-3813 * 시스템 화면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서비스 실시 전
↓		
제공인력 급여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정보 미등록시 급여등록 불가 - 제공인력 정보등록 후 급여등록 가능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제공기관이 등록한 급여등록을 시스템상 별도 공지 일자까지 승인처리 완료(승인된 정보만 급여등록 인정)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급여관리 >> 제공인력 CSI급여관리 	서비스 실시 후 익월 (매월 변동, 7일~23일)

- (제공인력 정보 보고의무)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을 등록(계약·계약 해지 기록 유지)
 - 인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 교육정보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 서비스정보 : 시간당 단가, 월 서비스 등
 - ※ 제공자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후 14일 이내에 입력
 - ※ 최초 등록 후 계약·계약 해지 등 변동 사항에 대해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 입력
- (월별 실적정보 보고의 의무) 제공자는 매월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을 매월 전자바우처시스템상 별도 공지되는 입력 기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광역사업)에 보고하여야하며, 시·도에서는 사업실적을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전자바우처시스템상 입력 종료 일자까지 보고
 - ※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필요시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매월 발생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록
 - 제공인력별 월급여, 근무시간 입력
 - ※ 제공인력별로 등록된 월급여의 합은 결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지역사회 제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 정보 등록 또는 다운로드 되는 양식(엑셀 등)에 제공인력 정보를 업데이트 한 뒤 해당월 급여 입력 (근무시간 입력은 해당사항 없음)
 - 매월 급여 등록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유무 입력
 - ※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리주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공통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공인력으로부터 징구 (제공자 보관)

※ 동의서 양식은 전자바우처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의 제공인력 카드신청 화면에 저장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발급 등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제작사와 발급정보 연계하고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의 효율적 관리 및 일자리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노동부 일모아 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연계하고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
-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을 위해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제공인력 정보를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

IV 현장점검(검사, 법 제32조)



1 현장점검의 근거

-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자체점검 및 합동점검)를 실시 할 수 있음
-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¹⁾으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3) 관계 공무원이 제공기관 등을 검사(현장점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또는 공무원증 등)를 반드시 관계인(대표자, 관계자 등)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

2 현장점검의 실시

- 1) 기본방향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운영자 및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업지침 준수 확인
 -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투명성 제고(부정사용 예방)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유지·향상을 위한 확인
 - 또한 시·도 및 시·군·구청의 사업관리 실태, 제공기관 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점검 및 사업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실효성 확보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의거 등록된 기관



2) 정기 및 수시 점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률 제32조 및 사업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내 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서비스 제공현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아래의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수시 점검은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 자체 및 복지부(정보개발원) 모니터링 결과 이상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 기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①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및 이용자 교육 등 적정 여부
- ② 서비스 제공 사실(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 ③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교육) 적정 여부
- ④ 제공인력 급여·4대보험·근무상황, 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 여부
- ⑤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여부)
- ⑥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자 권익 준수 여부

-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학계), 이용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정기점검의 경우 지도·점검 기간을 제공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은 정기점검 전에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공기관의 관계인(운영자, 책임관리자 등)은 현장점검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공기관 운영자 및 책임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 현장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현장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점검사항 등 관련 교육 추진
- 시·도지사는 매년 제공기관 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 연도 3월말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 점검 계획은 배경(목적), 점검대상(적정 품질관리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 실시하고, 점검결과 서식은 복지부 점검계획서의 결과 서식에 의거 작성
- 등록기관에 대한 1차적인 관리 주체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매년 등록된 제공기관의 70%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3

행정처분(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1) 부당이득징수

(1) 징수 요건(법 제21조)

- 제공자가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징수 주체 및 절차(시행령 제4조)

- (징수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 (징수 대상)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징수금 납부 조치 가능
- (징수 범위)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징수 방법)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 통지
 - ※ 미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수된 부당이득 중 타 시·군·구 이용자 관련 금액은 지자체 간 정산 실시
- (징수 절차) 시·군·구의 현장점검, 정보개발원의 부당지급서비스에 관한 조사를 통해 부정청구 여부 확인 후 시·군·구에서는 직접반납을 통보하거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과·오청구액(부당이득)의 차감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반환금액 확정)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하여 정보개발원 및 제공기관에 통보
 - (서비스 비용 반환) 제공기관의 장은 시·군·구로 직접 반납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로 반환
 - (부당이득 차감지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시·군·구가 징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제공기관에 서비스비용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2) 경고,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

(1) 처분요건(법 제23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7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9조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 처분 주체 및 종류

-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 (처분 범위)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영업정지 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처분 가능

(3) 세부 기준

- 처분 누적 및 가중·감경 규정

-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며 해당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름

-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1/2씩 가중

- 하단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개별 기준(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간 동 행정처분 횟수)			
	1차	2차	3차	4차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 ▪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 ▪ 거짓 정보 공개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간 등 행정처분 횟수)			
		1차	2차	3차	4차 이상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 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부당청구액 비율* 2% 미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이상 3% 미만	영업정지 10일			
	3% 이상 4% 미만	영업정지 20일			
	4% 이상 5% 미만	영업정지 30일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 부당청구금액 비율(%) : (대상기간 총 부당청구액/대상기간 이용권 관련 총 수입금액)×100으로 산정함(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함)

※ 부당청구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 1%마다 3일씩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함(소수점 이하의 부당청구액 비율은 1%로 간주)

3) 과징금

(1) 처분 요건(법 제25조)

-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처분의 주체 및 범위

-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 (처분 범위) 영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통지방법) 서면통지(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납부방법)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정한 기관에 납부하고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한 뒤에 시·군·구에 통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처분 세부기준(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17조)

● 일반기준

- (산정 방식) 영업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

- 영업정지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여든 기간)을 말하며, 1개월은 30일로 산정
- 1일당 과징금(하단 표 참조)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산정

- 처분일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 기준. 단,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 산출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별표1)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단위: 원)
1	10 미만	30,000
2	10 이상 ~ 30 미만	35,000
3	30 이상 ~ 50 미만	42,000
4	50 이상 ~ 70 미만	50,000
5	70 이상 ~ 100 미만	60,0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5,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30,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45,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60,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175,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190,000
15	1,000 이상	200,000



4) 과태료

(1) 부과 요건(법 제40조)

-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처분 주체

- 복지부장관, 제공자 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부과 세부기준(시행령 제9조 및 별표2)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금액 감경 사유(다음 각 호 해당 시 과태료 금액 1/2 범위 내 감경 가능,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호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2 범위 내 가중 가능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4) 벌칙

- 부과 요건 및 세부기준(법 제35조 내지 제38조)

요건	벌칙 내용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이용권을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시·군·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관련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자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알선한 자	
▪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이었던 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 준용되는 형법 조문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법 규정 상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형법」 관련 조문】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4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5조)
-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16조)
-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7조)
- 법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220조)
- 법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23조)
- 법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4조)

● 양벌규정(법 제3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4

현장점검 절차 및 주요내용

● 절차 및 주요내용

현장점검(검사) 절차	주요 내용
계획수립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현장점검 계획 수립내용에 대상기관 수, 점검기간, 점검항목 및 점검 착안사항 등 포함
↓	
점검반 구성	공무원의 업무여건에 따라 점검반 구성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전자바우처시스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일정 통보	현장점검 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	
자체점검	현장점검에 앞서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	
현장점검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1) 일정통보

- 현장점검(검사)는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와 제공기관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 이에 현장점검 일정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전체적인 일정과 점검 목적 등을 제공기관에 통지한다.



2) 제공기관 자체 점검

- 제공기관 스스로 운영일반, 재무회계,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제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는 제공기관이 제출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은 제출받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점검

- 현장점검단 또는 담당자는 제공기관에 도착하여 점검 로드맵에 따라 현장점검표를 작성하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4) 행정조치

-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시정·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행정처분을 받은 제공기관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고 및 검사 후 결과처리

-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위반사항 적발 혹은 통보받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처분 실시
- 처분결과를 행복e음 통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및 사회서비스사업과, 정보개발원에 통보
- 그 외 점검실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보고 및 검사 시 유의사항

- 사업제공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관 등록 시·군·구가 1차적 관리 주체가 됨
 -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 간 협조 통한 합동점검 및 시·도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가능

현장점검 주요내용

1. 사전준비사항

- 개인별 준비물 : 공무원증(명함), 법령, 지침
- 공통준비물 : 점검통지 공문, 점검안내문,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확인서 양식(파일), 기준정보
- 점검자료 사전확보

기관정보 : 제공기관명, 사업명, 참여사업, 등록일자, 시설규모(등록시 신고), 제공인력수 등

기관명	사업명	등록일자	시설	제공인력수	대표자	실무자	연락처	주소	비고

월별 결제내역(엑셀에 작성)

- 이용자별, 제공인력, 결제일자, 금액 등

이용월	제공인력	이용자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비고
		성명	생년월일	결제일자	금액		
				등급			
				1등급			
				2등급			

급여등록 현황 : 근무기간, 근무시간, 월급여, 보험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퇴직금 적립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내역(개발원)
보수지급 대장



2. 점검사항

점검분야	검사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가. 제공기관 등록	①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등록증 확인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제사항 확인 ○ 등록기준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공자 등록기준)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의 경우 33㎡이상의 시설(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공간 확보)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 책임자 겸직 가능) 나.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 세부사업별로 3명이상 ※ 특례 :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 별도의 제공 인력이 없어도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처벌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 법 제23조, ○ 법 제36조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나. 기관운영	① 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의 회계와 별도 분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도 개별회계로 분리 ○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 행정지도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② 기관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함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유도) ○ 제공인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 : 소양교육(5시간), 직무교육(15시간) - 보수교육 : 20시간 <p>* '15년부터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8시간으로 변경</p>	○ 행정지도
	③ 보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정보 보고)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등 ○ 급여등록(제공인력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 행정지도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증 사본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제공인력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2-55호) 고시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기준 ○ 미자격자 서비스 제공내역 확보(환수 대비) - 자격요건 미 충족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지원 불가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 환수(법 제21조) ○ 법 제16조 제2항 위반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행정처분
다. 제공인력관리	②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가입 - 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 아동인지 학습지 교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 	○ 행정지도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③ 퇴직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④ 제공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주에 평균 1회이상), 연차 및 유급 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최저임금 보장 ○ 제공인력관리시스템 관리 여부(입·퇴사 정보, 급여 정보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⑤ 제공인력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법령이나 사업지침 등에서 근무시간 내 전임 또는 개별사업운영 의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 시간 내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 불가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 환수
라. 이용자 관리	① 계약서 등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붙임)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계약효력 정지 및 취소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다. 서비스제공	②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 행정지도
	①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기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반영	○ 행정지도
	②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 내용 - 서비스유형, 서비스내용, 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제공 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계약서 작성시 첨부	○ 행정지도
	③ 서비스 실시 사전 사후 검사	○ 이용자의 변화 측정을 위한 사전 사후 검사 실시	○ 행정지도
	④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사업별 서식 제11호(제공기관에서 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이용자, 제공 인력명, 서비스내용, 제공일자 및 시간, 이용자 확인, 기타 중요사항 등	○ 행정지도 ○ 서비스 미제공시 부당 결재에 의거 조치
⑤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제공 형태(제가, 기관, 집합) 등	○ 법 제19조 제2항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⑥ 서비스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모니터링 항목에 맞게 하였는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⑦ 서비스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효과(변화도) 측정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부과 - 현금 수납의 경우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의 경우 통장 확인 - 가격의 10%이상 지자체의 장이 설정(최소 1만원 이상) * 단, 서비스가격이 10만원 미만인 사업은 지자체 자율 책정 - 이동관련 대상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10~30%까지 차등화 * 단 아동건강관리사업은 10%~40%까지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 법 제19조 제7항 제3호,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 행정지도
	①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재원칙 준수 - 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 결제 * '15년부터 장애인보호조기렌탈서비스,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회당(실시간) 결제 원칙으로 변경 ○ 부당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9조 제7항 제3호,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법 제23조, 법 제21조, 법 제36조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 행정지도
	② 정부지원금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사. 확인서 작성	① 처벌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카드 부정사용(카드번호 모관, 카드모관) ○ ARS 결제원칙 준수 - 통신음영지역 또는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또는 비우처 카드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결제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ARS-결제 사유 설명 ○ 유의사항 - 소급결제 및 ARS 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확인 받을 것 	
	② 확인자에 대한 사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을 입증 할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기관(제공기관 명), 사업명, 점검기간(부당청구 비율 산정시 활용),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위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수검자 및 점검자 확인서명(수검자의 경우 기관대표자 혹은 기관장에 준하는자, 위임 받은자), 확인서는 확인자, 점 검사 모두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치 및 조치절차 - 부당이득 징수(법 제21조) : 징수시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p>벌칙(법 제36조), 과태료처분(법제40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6조), 기타 행정지도 등</p> <p>법 제23조에 의한 제공자 등록 취소시 청문(법 제24조) 절차를 거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부당이득금 징수 등 ○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p>③ 확인서 내용(건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 - (규정)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2012.5.29)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리, 상담, 치료학(언어, 음악, 미술) 등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법 제00조 제00항, 지침 00쪽 등 기재 - (위반) 제공인력 000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12년 00월~'13년 00월까지 이용자 000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기간중 제공인력 000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p data-bbox="427 719 475 1375"><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80 719 655 1375"> <thead> <tr> <th>이용월</th> <th>제공인력</th> <th>이용자</th> <th>결제금액</th> <th>결제일자</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이용월	제공인력	이용자	결제금액	결제일자																
이용월	제공인력	이용자	결제금액	결제일자																			



3. 위반사항별 조치 및 근거(현장점검 시 주요처분 내용)

분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근거		비고
			위반	조치	
비용결제	부당청구 선결제, ARS 결제, 바우처카드 수거 결제	행정처분	법 제19조 제7항 제1, 2호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환수	법 제21조 제1항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본인 부담금	미징수 장소임대료 대체 집단규모위반	주의	지침	행정처분 : 지침	
		경고	법 제19조 제7항 제3호, 규칙 제3항 제2,3호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마호	
		경고	법 제19조 제2항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마호	
기준정보	제공횡수 부족 부가서비스 미제공	경고	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마호	
		경고	법 제21조 제1항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공인력 자격	자격미달	경고	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마호	
	심화교육미이수	환수	법 제21조 제1항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서류작성 및 사무관리	제공기록지 작성미흡	경고	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마호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미흡	주의	지침	행정처분 : 지침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행정처분 : 지침	

분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근거		비고
			위반	조치	
직원복지 (2건)	이용자 계약서 작성 미흡	주의	지침	행정처분 : 지침	
	제공계획서작성 미흡	주의	지침	행정처분 : 지침	
	정보보고위반	주의	지침	행정처분 : 지침	
	상해, 4대보험가입 미흡	주의	개별법	행정처분 : 지침	
	퇴직금적립미흡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행정처분 : 지침	

※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의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행정처분과 법 제36조(벌칙) 제3호 병행 적용 여부 판단하여 조치

-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참조 :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서울고법 1970.9.3. 선고 69노558)
 - ※ 과태료 처분 : 출입검사 기피, 방해, 거부, 거짓진술 등(법 제40조)

<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

-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에 따른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공비용 지급 불필요
 - 이용권 관리법 상 사회서비스는 법령 상 인력·시설·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이용권 관리법 상 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정부지원금 부분은 환수 가능
- * 본인부담금 및 제공인력 임금 지급 문제는 민사 문제(범무담당관실 견해)